2020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 시행계획, 2020.11.

방송통신위원회 의안·정책관리팀 (02-2110-1457)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11호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0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1. 그간의 정책성과 ····· 3

2. 2020년도 정책 추진방향 ····· 12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 23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 ····· 25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 28

Ⅲ. 세부 추진계획 ····· 33

전략목표 Ⅰ ····· 35

전략목표 Ⅱ ····· 70

전략목표 Ⅲ ····· 120

전략목표 Ⅳ ····· 161

Ⅳ. 환류 등 관련계획 ····· 189

1. 이행상황 점검 ····· 185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187

3. 변화관리 계획 ····· 191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계획 ····· 196

【붙임】

1-1. 성과지표 현황 ····· 207

1-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 208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0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2. 2020년도 정책 추진방향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0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적책임 제고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견서 발표 및 국회 논의지원,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 마련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고했습니다.

- 공영방송과 편성·제작 분야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한 정부의 활동 및 시민사회의 노력 등으로 정부출범 2년만에 언론자유지수가 '17년 63위에서 '19년 41위로 상승하였습니다.

연도별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국가 중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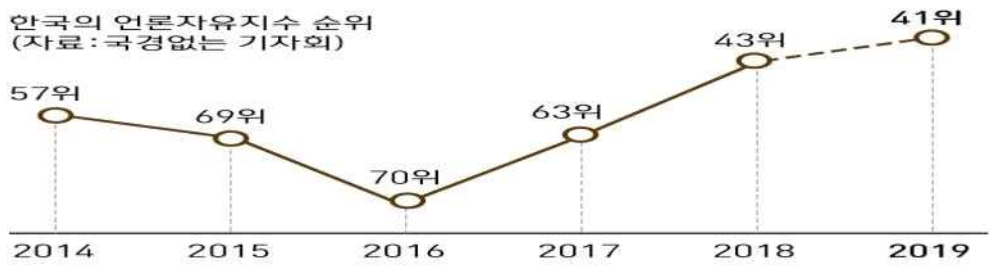

□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

○ 2019. 4월 강원도 산불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재난방송 요청기관을 행안부로 일원화, 대피방법·대피장소 등 실질적 정보 제공 강화, 행안부와 KBS 간 핫라인 개설 등을 통해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 및 사회적 갈등 해소, 정부 신뢰성 제고를 위해 "미세먼지 재난방송 대책(2019. 12월)"을 마련하고 재난방송 실시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수신료 제도 감면을 통한 국민부담 경감

○ 수신료 체납 가산율 인하(5%→3%)를 통한 체납 가산금의 감소로 수신료 납부자의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 수신료 면제자격(의료급여 수급자, 애국지사 등) 증빙을 구비하지 않고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어, 면제 대상자 중 증빙 없이 신청 가능한 대상이 약 67% → 99%로 증가하였습니다.

○ 수신료 징수자에게 수신료 선납 감액제도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홍보한 결과 선납 감액신청이 증가하여 국민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 매체간 규제 형평성 제고

○ 종편PP는 지상파 의무재송신과 달리 의무송출을 하면서 프로그램 대가도 받고 있어 매체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무송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공익적 채널 방송 유지 등 의무송출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종편PP 의무송출 폐지안을 법령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에 통보('18.12월) 하였으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19.12월)으로 종편PP 의무송출이 폐지되었습니다.

□ 전 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기반 마련

○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고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전국 8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2005년)에 이어 광주(2007년), 강원·대전·인천(2014년), 서울(2015년), 울산(2016년), 경기(2019년)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 지능정보사회 핵심역량을 갖춘 미디어 창의인재 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230→250개교), 동아리미디어교육(70→78개교), 대학생 대상 학점인정 교육과정(33→34개교) 등 학교미디어교육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18년 333개교 → '19년 362개교)

학교미디어교육 지원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201개교	230개교	250개교
동아리 미디어교육	68개교	70개교	78개교
대학연계과정	30개교	33개교	34개교

- 특히, 지역 간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등 원거리 거주민 또는 노인·장애인 등 여건상 대도시 중심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노인복지관 등 252개소 방문, 15,288명 이용)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백령도, '19.5.31.)

도서지역 미디어교육 (울릉도, '19.6.18.~21.)

섬마을 미디어페스티벌 (보길도, '19.8.27.~28.)

□ 방송통신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자사 계열 PP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하여 중소 PP의 수익을 제한한 ㈜씨엠비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19.10.23)하는 등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19.1월) 마련 및 이행점검, ‘IPTV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 협약’(‘19.6월) 및 ’TV홈쇼핑-납품업자 간 상생협력 선포‘(‘19.6월) 등을 통해 방송시장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 외주제작 계약서 구성, 제작비 산정·지급 등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19.7월)·시행(‘19.11월)하고,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현황 파악을 위해 방송사·외주제작사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문체부 공동)하였습니다.

○ 또한,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순수외주제작물 편성규제 종편PP 적용하였으며 지상파·종편PP 방송통신발전기금 동일 기준 적용하고 종편PP 의무송출 규정 폐지하여 공적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종편PP 의무송출 폐지 언론 보도

중앙일보

종편도 경쟁력따라 희비 갈린다, IPTV·케이블 의무 송출 폐지

○ 국내외 사업자가 간 차별 규제 해소를 위해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마련하였습니다.

○ 통신장애 시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약관 상 손해배상 금액 확대(6→8배) 및 초고속 인터넷 장애 시 위약금 면제시간을 단축(48→24시간)하였으며,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OTT 국내 본격진출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연합OTT 출범을 지원하고 한·베트남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베 협정체결식	한-베 협력방안 논의

한-베트남 협정 관련 양자면담	한-터키 MOU체결

○ 방송교류 활성화를 위해 방송 공동제작 국제컨퍼런스와 '한-아세안 방송콘텐츠의 미래와 협력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확보·운영하고자 '국경 없는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을 발족·운영하였습니다.

한-아세안 심포지엄	한-아세안 심포지엄 종합토론	BCBB 서명식	BCBB 회원인사 (영상)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의 TV·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방송광고 교육 및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강화 및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통해 '19년 제작 시장에 40억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하고, 지원 기업들의 매출액이 '18년 대비 19.9% 상승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 및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방송광고 제작지원 선순환 구조도>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제고

○ 저소득층 장애인을 중심으로 전용 TV수신기 보급을 실시하고 방송사의 장애인 방송 제작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향상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였습니다.

시·청각장애인용TV 저소득층 누적보급률	시청각장애인용 TV 만족도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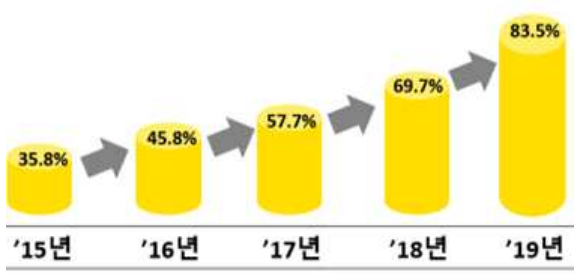	

○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방송이용 최적화를 위해 수어 영상의 크기, 위치 등을 조정, 제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시청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개시('19.7월)하여 방송이용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수어방송	스마트 수어방송
• 수어영상 크기 고정(제거 불가) • 방송자막과 폐쇄자막 겹침	• 수어영상(5배 확대) 위치 변경 및 제거 • 방송자막·폐쇄자막 및 방송영상·수어영상 분리

□ 건전한 통신·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차단을 위해 전 부처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성인 및 청소년의 건강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 합동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하습니다.

-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는 경우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조치 의무 신설(전기통신사업법 개정, 6월 25일 시행)하였고, 수사기관 요청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즉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을 마련(정보통신망법 개정, 3월 25일 시행)하였습니다.

- 더불어,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41개 사업자, 90개 사이트, 2019년 1월 기준) 대상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의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32개 사업자, 37개 사이트)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미이행한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2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총 2,100백만원)를 부과하습니다.

○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2022’ 종합대책(’17~’22년)을 마련하여, 전국민 대상 100만 인터넷윤리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약계층, 학부모, 군인 등 교육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이용자 피해·불편사항 적극 발굴·개선

○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경우 건물주와 특정 통신사업자 간 단독 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기존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에게 할인반환금[1]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였습니다.

1) 기간을 약정한 서비스 이용 중 해당 서비스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과

-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으로 계약된 건물로 이사하는 경우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 시에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해 왔으나, 2019년 8월부터 이런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처리 하였습니다.

집합결합 단독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해지 시 할안반환금 개선

2. 2020년도 정책 추진방향

1 활력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방송규제를 과감히 혁신하여 미디어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하여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개선, 방송기술결합 심사 완화 등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개선, 방송기술결합 심사 완화 등 방안을 마련하고, 매체 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 중간광고(지상파 금지, 유료방송 허용), 가상·간접광고(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100, 유료방송 7/100) 등

-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 허용 등)를 통해 제작 재원을 확충하고, 미디어렙 업무영역 확대(온라인을 통한 방송콘텐츠 광고까지 확대) 등 방송광고 판매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방송편성 규제 관련, 1개 국가 수입프로그램(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 상한(80%) 개선, 지역민방 수중계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여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새로운 규제체계를 중장기적으로 마련하여 신융합서비스에 대해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미디어 개념을 정의하여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겠습니다.

○ 기술발전으로 도입되는 신규 서비스 추진에 대한 규제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규제원칙 제시 및 진입규제 완화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규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AI 기반 서비스 관련 이용자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 등 사전제시 하겠습니다.

- 위치정보를 활용한 5G·AI 관련 융합서비스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허가제→등록제) 추진

○ 세계 최초로 도입('15년)된 지상파 UHD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 경영상황, 해외현황 등 환경변화를 정책에 반영, 「UHD방송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콘텐츠 제작, 의무편성비율의 현실화 및 유료방송 플랫폼으로의 재송신 등 UHD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한류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 '미디어 빅뱅' 시대 성공전략의 핵심인 질 높고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 되도록 정책적 지원 및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방송콘텐츠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문화적 다양성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EBS, 지역방송, 공동체라디오, 통일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 '20년 예산 : EBS 283억원, 지역방송 40억원, 공동체라디오 2억원, 통일프로그램 3.4억원

-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및 종편PP에 부과한 재허가·재승인 조건(약 9,000억원)*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 지상파 3사(UHD) 약 3,000억원, 지역방송 약 1,100억원, 종편PP 약 5,000억원

○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과 방송콘텐츠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방송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 신남방(태국)·신북방(러시아·터키)·북미(캐나다) 등 거점국가 대상 협정 체결 추진

-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국제마켓(MIPCOM 등)*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개최하여 향후 10년 방송한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획기적 모멘텀을 마련하겠습니다.

* 매년 10월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영상마켓으로, 100여개국, 4,500여개 방송사, 13,000여명 이상 참여

□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엄정 조사·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하겠습니다.

-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제 시행 점검, 개인정보 침해 및 이용자 피해 조사 및 주요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민원센터 운영현황 등‘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실시하겠습니다.

○ 신유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신설, 현장조사권 도입으로 방송시장 조사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자사가입자 서비스 이용 방해(방송차단), 품질(해상도) 저하 행위 등 신유형 방송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 유료방송 플랫폼(SO·위성·IPTV)의 금지행위 조사 시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조사권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 방송통신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국민불편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상생 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유료방송시장 과다경품, 단말기유통 과정의 비정상 영업채널,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등 집중 점검, 5G 기반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와 중소 CP 간 상생협력 유도하겠습니다.

○ 방송 외주 제작 시장의 공정 환경 조성으로 방송분야 상생협력 모델 정착을 위해 지상파·종편PP 재허가(재승인) 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조건으로 부가하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외주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마련 등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점검, 우수 사례 발굴 · 홍보를 통한 이행 독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지상파·종편·보도PP 재허가(재승인)시,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전략 등을 중점 심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재허가(재승인) 여부 결정 및 조건 부가하겠습니다.

- 보도 과다편성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균형편성'(종편PP), 지역성 제고 목적의 '지역프로그램 제작'(지역방송) 등 심사항목 신설 및 과락기준 상향(40%→50%) 하겠습니다.

※ (허가·승인 대상)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보도PP 사업자

○ 무분별한 정보의 범람 속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송 보도와 자율적인 법령준수를 유도하여 건전한 방송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 우수 방송프로그램을 시상하고, '찾아가는 법규 설명회'등 방송사업자 대상 법령교육을 강화하여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법령준수 및 방송의 공적책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송사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겠습니다.

○ 콘텐츠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여론을 형성하는 소통플랫폼인 지역미디어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방송(지역밀착 콘텐츠 제작), 지자체(지역콘텐츠 제작 지원), 지역별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순환 구조 확립하겠습니다.

※ 3년마다 수립하는 '제3차 지역방송발전계획'에 반영('20.하)

- 유료방송 M&A 사전동의 심사 시 지역채널의 독립적 운영 방안, 콘텐츠 투자계획 등을 중점 심사하여 지역성과 다양성 제고와 SNS·모바일 유통 환경에 적합한 지역방송 콘텐츠에 대한 제작을 지원('20년 40억원)하고, OTT 플랫폼에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추진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출연자, 외주제작 인력 등 방송 종사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 출연자의 노동권, 프라이버시 등 권리 보장을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준수 여부를 재허가 및 방송평가 규칙에 반영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 아동출연자의 근로기준, 출연자 신체접촉 및 부적절 언어사용 금지 등

- 외주제작사 제작인력의 상해·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 **방송정책 국민 참여 확대**

○ KBS·E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사장 선임 시, 국민참여 보장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시, 국민들의 의견을 홈페이지에 접수 받아 방송사 대표자에게 직접 질의하고, 답변 공개(『국민이 묻는다』 전용 홈페이지 신설) 하겠습니다.

- 공익광고 신규 제작시, 국민제안 및 여론 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관심사(예시 : 안전 및 환경 등)를 적극 반영, 유료방송(종편·보도·대형PP)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을 상향(0.05%→0.1%)하고, 주시청 시간대 가중치를 부여하여 편성 확대 유도하겠습니다.

□ 재난방송 신뢰성 강화

○ 기존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안전정보 제공, 재난 취약계층 배려, 주관 방송사 역할·책임 제고 등 재난방송의 신뢰성·신속성 강화하겠습니다.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리정보를 활용한 재난상황 그래픽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KBS가 보유한 재난CCTV 영상을 타 방송사와 공유하겠습니다.

- 재난방송 수어통역 인력 교육 및 확충,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서비스 제공 확대하겠습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겨울철에 미세먼지 재난방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미세먼지 재난정보(다큐, 캠페인 프로그램 등) 제공으로 국민경각심 제고 및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 허가(재승인) 시 '재난방송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재난방송 편성의 적절성' 등을 방송평가에 반영하여 책임성 제고을 하고 강화된「재난방송 실시기준」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방송 실시 점검 강화하겠습니다.

3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 불법유해정보 적극 대응

○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음란물·도박·마약 등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여 청정 인터넷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여가부·경찰청·방심위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내 심의를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여 웹하드 사업자 필터링 적용하겠습니다.

※ 웹하드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 점검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발견할 경우 경찰청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사·심의를 요청하고,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증원(18→30명) 및 필터링 점검 강화(주1회→상시)

- 마약, 여성폭력, 자살, 저작권, 혐오표현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여가부·인권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추진하고 불법유해정보 등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딥페이크, 다크웹 등 신종 기술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 등 협력 추진

○ 사실관계 검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팩트체크 기술 및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팩트체크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겠습니다.

※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투명하고 공정한 팩트체크 기준 및 절차를 확립

- 전국민 대상으로 팩트체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팩트체크 결과물 등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 음란물·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스팸·플로팅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 확대 운영, 사이버안심존 개선* 및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앱 보급을 확대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마련 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앱에 이용시간 자율 조절기능 및 몸캠피싱 방지기능 도입

-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팸 차단기법을 고도화하고, 관계기관*에 스팸 데이터 개방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출사기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플로팅 광고, 과도한 모바일 팝업 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는 신유형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한국마사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감원, 지자체, 식약처, 한국거래소 등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강화

○ 지능정보사회의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민관 협의체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운영하겠습니다.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 운영 및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통신서비스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신산업 분야 개인정보 침해 이슈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결합상품 해지 절차 간소화, 통신분쟁 온라인 대면조정·실시간 처리확인 시스템 구축, 재외국민 등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등 통신 이용자 불편 사항 해소하겠습니다.

- 지능형 스마트홈 등의 확산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나 음성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는 AI스피커, 홈시큐리티 서비스 등 실태점검을 하겠습니다.

○ 참여·공유의 시대가치에 맞춰 시청자의 관점과 권리를 적극 반영하는 능동적 시청자 참여모델을 만들어 시청자 주권을 강화하겠습니다.

- '시청자 권리 선언문' 제정 및 '시청자의 날' 지정, 시청자 권익 보호 전담기구 설치, 시청자위원회 자체운영규정 개선 등 추진

○ 국민의 방송통신 이해와 활용·제작 역량을 높이고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 참여기회를 확대해 미디어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 전 국민에게 균등한 미디어접근권 보장을 위해 17개 광역지자체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추진('19년 8개 → '20년 1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인터넷 윤리체험관 구축도를 확대('19년 4개소→'20년 5개소)하겠습니다.

- 어린이·노인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미디어역기능 대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 학생·소외계층·마을단위 맞춤형 미디어교육 확대* 및 전국민 대상 계층별 인터넷 윤리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 미디어교육·체험 인원 확대 목표 : '19년 28만명 → '20년 31만명

□ 방송통신 소외계층 지원 강화

○ 디지털 미디어 시대 방송소외계층이 방송콘텐츠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방송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15,000대, 저소득층 누적보급률 90%), 시·청각장애인(화면해설·자막·수어방송) 및 발달장애인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 AI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제고하기 위해 음성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운영(보도분야) 하고 시·청각장애인용 지상파방송 VOD 인터넷 서비스 확대 및 지원(7억원) 하겠습니다.

○ 방송광고를 활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광고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16.4억원) 하겠습니다.

○ 정보취약계층(노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통신장애 시 행동요령, 통신서비스별 맞춤형 피해구제 등 교육 콘텐츠를 개선하겠습니다.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
2.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개요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

(1) 조 직 : 1처 3국 2관 18과(담당관) 2팀 / 1소속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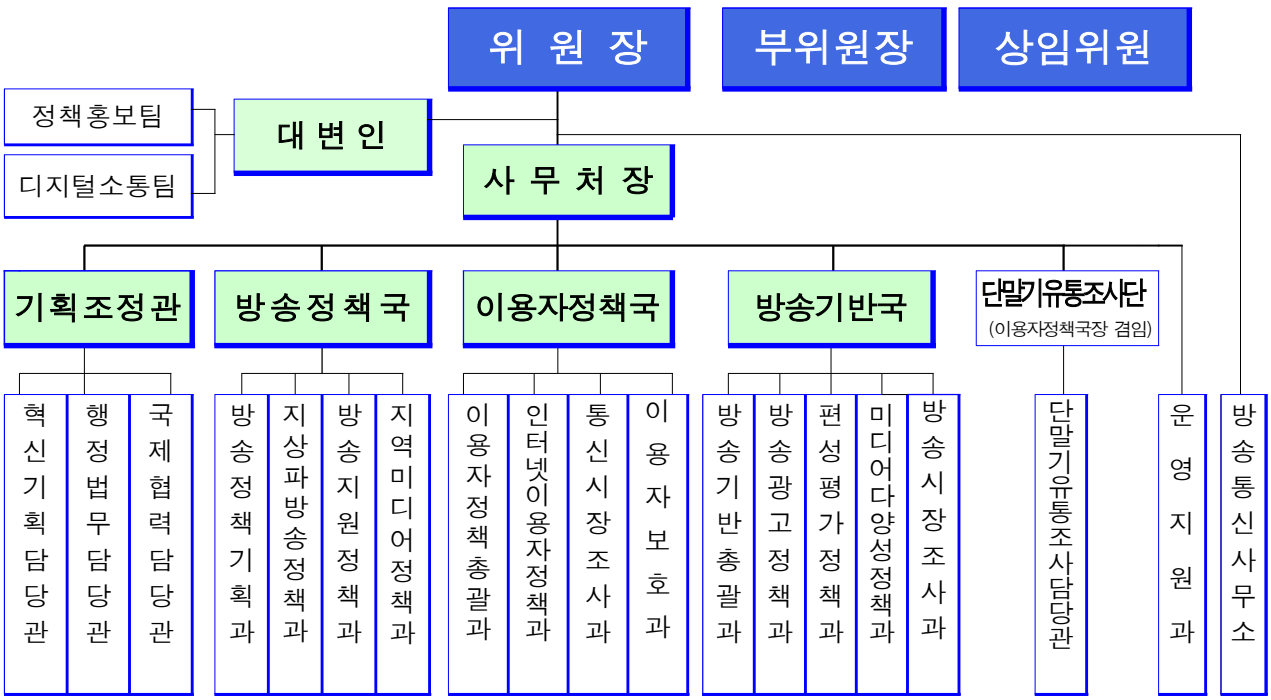

(2) 정원 : 274명

('20. 8월말)

구 분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계
본부	5	6	5	14	17	71	110	228
소속기관				1		5	40	46
계	5	6	5	15	17	76	150	274

(3) 소관 법률

분 야	법 률 명
방 송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일부) ○ 방송법 (일부)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방송문화진흥회법 ○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통 신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전파법 (일부)

(4)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	'20	'21	'22	'23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2,579.3	2,610.4	3,120.8	3,312.0	3,466.8
(전년대비증가율, %)		(1.2)	(19.6)	(6.1)	(4.7)
ㅇ 총계	2,579.3	2,610.4	3,120.8	3,312.0	3,466.8
(전년대비증가율, %)		(1.2)	(19.6)	(6.1)	(4.7)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221	257	275	294.2	314.8
(전년대비증가율, %)		(16.3)	(7.0)	(7.0)	(7.0)
ㅇ 기본경비	39.7	43.5	44.8	46.1	47.5
(전년대비증가율, %)		(9.6)	(3.0)	(3.0)	(3.0)
ㅇ 주요사업비	2,286.1	2,310	2,801.1	2,971.6	3,104.4
(전년대비증가율, %)		(1.0)	(△4.0)	(△0.1)	(△0.2)
□ 예산					
ㅇ (총)지출	627.7	627.9	789.1	800.6	833.6
(전년대비증가율, %)		(-)	(25.7)	(1.5)	(4.1)
ㅇ 총계	627.7	627.9	789.1	800.6	833.6
(전년대비증가율, %)		(-)	(25.7)	(1.5)	(4.1)
【일반회계】[1]					
ㅇ (총)지출	627.7	627.9	789.1	800.6	833.6
(전년대비증가율, %)		(-)	(25.7)	(1.5)	(4.1)
ㅇ 총계	627.7	627.9	789.1	800.6	833.6
(전년대비증가율, %)		(-)	(25.7)	(1.5)	(4.1)
□ 기금					
ㅇ (총)지출	1,951.6	1,982.6	2,331.8	2,511.4	2,633.2
(전년대비증가율, %)		(1.6)	(17.6)	(7.7)	(4.8)
ㅇ 총계	1,951.6	1,982.6	2,331.8	2,511.4	2,633.2
(전년대비증가율, %)		(1.6)	(17.6)	(7.7)	(4.8)
【방송통신발전기금】					
ㅇ (총)지출	1,951.6	1,982.6	2,331.8	2,511.4	2,633.2
(전년대비증가율, %)		(1.6)	(17.6)	(7.7)	(4.8)
ㅇ 총계	1,951.6	1,982.6	2,331.8	2,511.4	2,633.2
(전년대비증가율, %)		(1.6)	(17.6)	(7.7)	(4.8)

※ '19년 실적, '20년 예산, '21년 이후 기재부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 상의 예산액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방송사 재허가시 공적책임 중점 심사 및 방송 공정성 평가 강화와 함께, 방송사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 유도 및 아동·청소년의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 세계 최초 도입('15년)한 지상파UHD서비스에 대해 'UHD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미디어 환경변화와 사업 여건, 해외 현황 등을 반영한 활성화 대책 마련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전면 혁신해 미디어 산업 활성 추진

○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유료방송사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 개선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고, 표준계약서 활용을 독려하여 외주제작 시장의 상생협력 모델 정착

○ 국민 참여를 확대해 방송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승인(재허가) 심사 시 국민이 묻는 의견청취 제도 도입 추진

○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신속한 심의(24시간 이내) 차단, 관련 영상물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는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근절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대언론 정책홍보를 강화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제고

(2) 202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체계

임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한다.

비전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①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②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 종편·보도채널의 공적 책무 강화

Ⅱ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
- 상생의 통신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보호와 권익강화
-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

②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 이용자 불편해소 및 위치정보의 안정성·활용 강화
-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Ⅲ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복지를 제고한다.

①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②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 시청점유율 조사 타당성 제고

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①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 원활한 정책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 규제개혁 적극 추진
- 국정가치를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

②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4	8	10	25	40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환경변화에 대응한다.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국정 70-1 업무 1-1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국정 70-1 업무 3-2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국정 70-2 업무 2-1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국정 70-1 업무 2-3
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국정 4-1, 4-2 업무 2-1, 2-3
	② 종편·보도채널의 공적 책무 강화	국정 4-1, 4-2 업무 2-1, 2-3
Ⅱ.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 상생의 통신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보호와 권익강화	국정 33-9 업무 1-3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국정 31-6 업무 1-3, 3-2
	③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국정 31-6 업무 1-3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	국정 33-6 업무 3-2
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이용자 불편해소 및 위치정보의 안정성·활용 강화	국정 70-5, 33-9 업무 1-1, 3-1, 3-2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국정 70-5 업무 3-1

성과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Ⅲ.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업무 2-1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국정 70-1 업무 3-3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국정 70-4 업무 1-3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국정 70-4 일자리 59-1, 업무 1-2
	②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일자리 59-2 업무 3-3
	③ 시청점유율 조사 타당성 제고	업무 1-1
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②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③ 규제개혁 적극 추진	
	④ 국정가치를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	
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업무 1-3

Ⅲ
세부 추진 계획

전략목표 Ⅰ
전략목표 Ⅱ
전략목표 Ⅲ
전략목표 Ⅳ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OTT 서비스 성장과 글로벌 미디어 확산으로 인한 미디어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방송 공공성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 규제체계 개선방안 및 방송·통신 제도 정비 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미디어의 제작·활용 및 비판적 이해 능력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세대 간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해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확대가 필요

○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 제고 및 자립 기반 조성 마련 필요

○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경주와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 코로나19 확산 등의 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필요

○ 글로벌 미디어의 국내 진출에 따른 경쟁 심화로 방송의 상업화와 공익성 저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 필요

-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공적책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재허가 · 재승인 심사가 필요

◇ 그 간의 성과

○ 방송·통신·미디어·법률 전문가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운영을 통해 방송규제체계 개선 방안 및 방송·통신제도 정비방안 등을 논의

○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로 개관(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하여 시청자의 미디어접근성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시청자 참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

○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유통 및 교육·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한국방송대상 등 15개 프로그램 24회 수상, 시청자 만족도 향상('16년 85.6점→'19년 86.8점) 및 국내외에서 판매 수익 증가('16년 4.63억→'19년 8.55억) 창출

○ 태풍 발생('19년)시 신속한 재난방송 요청을 통한 피해 최소화, 사회재난방송 강화를 위한 재난방송 관련 고시 및 매뉴얼 개정, 재난주관방송(KBS)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실시방안 마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엄정히 심사하고, 관련 조건 부가를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 '17년도 재승인 시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등을 위한 조건을 부가한 이후 종편 4개사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건수('16년 207건 → '19년 56건) 및 법정제재 건수('16년 22건 → '19년 2건)가 큰 폭으로 감소

◇ 중점 추진내용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및 공적책무 강화방안과 미래지향적인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방안 마련

○ 국내·외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당초 계획 보다 미흡한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정책방안을 마련

○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등 학교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와 마을 미디어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간 미디어 격차 해소를 지원

○ 유통 가능성이 높은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해외 콘텐츠 마켓 참가 확대를 통한 인프라 발굴·확대,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자체 제작역량 강화 추진

○ 실질적인 안전정보 제공, 재난취약계층 배려를 통한 재난방송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재난방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함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른 매체별 중점심사 사항을 엄정히 심사하고 심사시 부가한 조건에 대해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

◇ **전략목표와 임무 간의 상관성**

○ 방송제도개선 방안 추진과 지상파UHD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디어의 공공성과 산업성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 전 국민 대상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로 누구나 미디어를 통하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제고하고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함으로써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

○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기반 조성 구축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

○ 방송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수습·복구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이행실적 점검,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강화 및 시청자 권익 증진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6	9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① 방송사업자의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
I-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①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율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① 미디어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② 미디어교육 이수율 ③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① 지역방송 지원계획 이행률 ② 방송사 자체제작 투자비율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① 방송통역 수어 통역사 재교육
I-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제고율
	② 종편·보도채널의 공적 책무 강화	① 종편·보도PP의 공적 책무 제고율

전략목표 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1) 주요내용

□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신장

○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추진, 방송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이행점검 등을 통해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

□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지상파UHD 활성화 방안 마련, 지역·중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제고, 전 국민 대상 보편적 미디어교육 강화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미디어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24			
방송사업자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건)	-	-	-	-	14	14	선거가 있는 해인 '20년(국회의원 총선), '24년(국회의원 총선)의 경우 공정성 제재건수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 '19년 실적과 같은 제재건수를 설정	방송법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건수 + 방송 공정성 위반**에 따른 방송심의 제제 건수 * 방송법 제4조제2항, 제3항, 제4항 위반 **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14조(객관성) 위반	방송사업자 제재 현황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방송통신 시장의 인수합병,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 본격화가 진행

○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의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콘텐츠 제작역량 약화, 지상파UHD 시설 및 제작 투자 여력 감소

○ 급변하는 방송환경, 광고 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지역·중소방송의 경영 환경 악화 및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 저하 우려

○ 시청자미디어센터가 8개 광역권에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간 미디어교육 서비스의 형평성 우려

□ 갈등요인

○ 기존 방송사업자와 OTT 등 신유형 서비스 사업자 간 갈등과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

○ 지상파 UHD 방송의 재전송 여부,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지상파, 유료방송 및 가전업계 등 간의 이해 대립 예상

○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존립 기반 구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나 정부의 예산상 지원에는 한계 존재

○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신규 구축을 추진 중이나, 건축물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운영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갈등관리계획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중장기적인 방송 제도개선 방안과 지상파UHD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방송사에서 필요로 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자립기반 조성

- 해외 콘텐츠 마켓 참가 확대 및 뉴미디어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 유통 판로 및 제작역량 다각화를 도모

○ 해당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20년에 지역 시청자 미디어센터 2개소(세종·충북)의 신규 구축을 완료하고, 추가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와의 협의 노력을 지속

성과목표 Ⅰ-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1) 주요 내용

○ OTT 서비스 성장과 글로벌 미디어 확산으로 인한 미디어간 경쟁심화에 대응하여 방송 공공성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규제체계 개선방안과 방송·통신 제도 정비 방안 마련

○ 시청자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 국민 대상 콘텐츠 제작 교육, 방송 제작시설·장비를 활용한 미디어 체험 교육,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교육 등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 지역·중소방송이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민에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기반을 조성

○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율(%)	-	-	신규	100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와 재난방송 수신지원 관련 과제 목표 달성 결과 측정	① + ②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 0.5** ※ 5점 리커트 척도(만족도 목표치 92.2을 100점으로 환산) ②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터널수 목표 달성도 × 0.5** ※ '20년 목표 : 300개	개별 지표 실적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융합 및 경쟁 환경 하에서 방송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유튜브, 페이스북 등 참여형 미디어 확산으로 이용자의 적극적 미디어 이용과 정책참여 수요 확대

- OTT등 경계영역 서비스를 포괄하는 방송·통신 규제체계를 정비하여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원칙 마련 필요성 증대

○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가 '19년 62만4천명에 이르고 있으나 전국 8개 광역권에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 간 미디어 교육 서비스의 편중 발생

○ 모바일을 통한 동영상 시청 등 시청행태의 변화에 따라 방송권역의 제한을 받는 지역 지상파방송의 위상과 기능은 약화

- 종합편성PP의 성장 등 채널의 다양화로 방송매체별 경쟁이 심화되어 지역방송의 방송시장 점유율 및 광고매출 지속적 하락

- 인원 감축 및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역방송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지역방송의 공적기능이 훼손될 우려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재난유형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재난방송 관리체계가 미흡

□ 갈등요인

○ 지상파 등 기존 미디어는 신규 서비스·글로벌 기업 등과의 무한경쟁에 내몰림에 따라 기존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 증대

○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추가 구축 관련, 센터 건축물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하여 마련하고 운영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6:4로 분담하고 있어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작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나 사업자는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

- 고용인력, 제작비 투자 축소 등으로 콘텐츠 경쟁력이 약화되어 지역방송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는 등 악순환

- 지역 지상파사는 존립 기반 구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나 정부의 예산상 지원에는 한계 존재

○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시설관리자가 터널·지하공간에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14.6월 개정되었으나 투자에 소극적

- 시설 관리 주체의 관심부족으로 자체 예산확보가 미흡하고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나, 정부의 예산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터널이나 지하공간에 재난방송 수신 불량률이 높음

□ 갈등관리계획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및 공적책무 강화방안과 미래지향적인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 방안 등을 마련하고,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설명 등으로 해당 제도개선안의 입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

○ '20년에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2개소(세종·충북)의 신규 구축을 완료하고, 센터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조

○ 지역방송사에서 필요로 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자립기반 조성

- 해외 콘텐츠 마켓 등 참가 확대 및 뉴미디어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 유통 판로 및 제작역량 다각화를 도모

○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전달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부처와 방송사업자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Ⅰ-1-①)

□ 추진배경(목적)

○ 인터넷·모바일·융합시대 OTT의 등장으로 방송·통신 등 경계가 모호해지고, 서비스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방송이 담보해야 할 다원적 가치 및 공공성·공익성 실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시청각미디어 서비스에 최소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

- 또한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공적 방송매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적재원(수신료, 기금 등) 확보 및 지원의 합리성 등을 재정립할 필요

○ '15년「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수립 이후 지상파방송사 경영여건 악화, 해외 UHD 방송시장 미성숙 등으로 관련 추진이 미흡한 실정

- '고품질 UHD서비스 안착으로 시청자 편익제고', '방송·통신 및 연관 산업 활성화 도모'의 정책목표는 일관되게 유지하되, 시장 및 기술여건 등 국내·외 방송통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적 개선·보완방안 마련 추진

○ 추진근거

- 방송법 제4조(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44조(공사의 공적책임), 제56조(재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수립)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방송제도 개선 방안 마련)**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정책안을 토대로 정책연구*와 연계하여 방송·통신 규제체계 법제화 방안과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적재원 조달의 정당화 논거 등 마련

*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법제도 방안 연구
* 방송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구조 및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

- 이용자 중심으로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정의하고,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계층별 규제체계 방안을 마련하여, 신규 서비스에 대한 최소 규제와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세부 평가방안과 절차를 마련하며 수신료 및 기금 등 공적재원 구조를 개선하여 합리성과 안정성 제고 추진

② **(지상파UHD 활성화 추진)** 방통위, 과기부 등 관련부처, 지상파 방송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추진단 및 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정책방안을 마련

- UHD 부가서비스 확대, 콘텐츠 제작 및 기술개발 지원, 시설·장비 및 콘텐츠 투자 및 콘텐츠 편성 이행, 수신환경 개선 등 UHD 확대일정 합리적 방안 마련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상파UHD 활성화 추진단 운영	3월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정책제안서 공개	3월	
2/4분기	지상파UHD 활성화 정책협의회 운영	6월	
	'통합 법제도 연구반' 구성·운영	5~11월	
	'방송산업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구조 및 규제 개선' 관련 연구반 운영	5~11월	
3/4분기	지상파UHD 정책방안 위원회 논의 및 발표	7월	
	국내외 법제도 및 주요국 시장동향 조사	9월	
4/4분기	'방송통신·인터넷 통합 법제도 방안' 관련 의견 수렴	11월	
	방송산업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구조 및 규제 개선' 방안 마련	12월	
	'방송통신·인터넷 통합 법제도 방안 마련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시청자)** 방송규제개편 및 지상파UHD 활성화 방안 마련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청자에 양질의 다양한 공적서비스 제공 가능

- **(방송사업자)** 규제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이 제시되고 지상파 UHD 확산 일정 등이 확정되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이해관계집단

- **(기존 방송사업자 및 OTT사업자)** 기존 방송사업자와 신유형 융합서비스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지상파, 유료방송 및 가전업계 등)** 지상파 UHD 방송의 재전송, 재원확보 등 사안에 따라 재원부담, 기술개발 및 시행 등에 대한 사업자간 이해 대립

□ 기대효과

○ 방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 개선의 기반 마련

○ 지상파UHD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으로 시청자 복지와 산업 발전 양 측면의 긍정적 효과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미디어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	-	-	-	90	방송제도 개선 방안 및 지상파UHD 정책에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고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 '20년 목표치를 90%로 설정	① + ② ① 방송 제도개선 방안 정비 추진율(0.7) 연구반 운영X0.2+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X0.2+방안마련X0.3 ② 지상파UHD 활성화 방안 정비 추진율(0.3) 지상파UIHD 활성화 정책 추진단 등 운영X0.1+방안마련 X0.2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Ⅰ-1-②)

□ 추진배경

○ 미디어의 제작·활용 및 비판적 이해 능력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세대 간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해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확대가 필요

○ 추진근거

-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2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상설 미디어교육)**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 교육, 방송제작 시설·장비를 활용한 제작 실습,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 제고 등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 **(학교 미디어교육)** 지능정보사회 핵심역량을 갖춘 미디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동아리 미디어교육, 대학생 학점인정 교육 과정 등 학교미디어교육 확대

○ **(마을 미디어교육)**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생활미디어(영상, 라디오 등)를 직접 제작·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교육 확대

○ **(소외계층 미디어교육)** 장애인, 다문화 가정, 노인 등 미디어 접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단체를 지원하여 미디어 격차 해소

○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방송제작 시설·장비가 탑재된 미디어나눔버스를 운영하여 농·산·어촌 주민 또는 노인·장애인 등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분들에게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제공

○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교육)**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 등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미디어 역기능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지역 참여행사 개최)** 각 지역 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디어교육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모전·페스티벌 등 개최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상설 미디어교육 운영	1~12월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1~4월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3~12월	
2/4분기	자유학년제 등 학교미디어교육 지원	4~12월	
	미디어교육 단체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4~12월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및 교육 실시	4~12월	
	마을미디어교육 컨설팅 및 교육 실시	4~12월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5~12월	
3/4분기	미디어교육 컨퍼런스 개최	7월	
	매개자 교육 실시(학부모·교사 대상)	7~12월	
	지역 센터별 시청자 참여행사 개최	8~12월	
4/4분기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11월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수혜자

- (전 국민) 다양한 미디어 이해·활용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디어 역량을 제고

○ 이해관계자

- (지방자치단체) 전국 광역권별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

- (타 기관 미디어센터) 타 기관 소규모미디어센터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등 인프라 및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의 허브 역할 강화

□ 기대효과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방송제작 시설·장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을 강화하여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등 국민들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에 기여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간 미디어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마을 미디어교육을 확대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

○ 자유학기제 등 학교 미디어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미디어 수용 능력을 제고하고 미디어 관련 분야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

○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를 통해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등 미디어 역기능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올바른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③)			
①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3133)	방송통신 발전기금	241 (257)	198 (213)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303)		241	198
- 시청자권익증진 사업		33	3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7 '18 '19	목표치 '20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만명)	52.9 57.6 62.4	71	최근 3개년 평균값을 기준(57.6)으로 평균증가율(8.6%)를 반영하여 71만명을 '20년 목표치로 설정 - 신규 센터*는 최근 개관한 울산센터 1년차 실적치 적용 * 경기(4.3)·충북·세종(4.3)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합계	사업 수행결과 자료 (시청자미디어센터 전체 이용자 수)
미디어교육 이수율(%)	85 87.5 88.2	88.7	최근 3개년 평균값을 기준(86.9)으로 평균증가율(2%)를 반영하여 88.7%를 '20년 목표치로 설정	(미디어교육 수료인원 / 미디어교육 수강인원) x 100	사업 수행결과 자료 (시청자미디어센터별 교육 수강인원 대비 수료한 인원 실적)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91.3 91.8 92.1	92.2	최근 3년간 목표 구간이 90점대로 임계치에 가까워지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목표치 증가율이 감소하는 비율(-39.2%)의 2배(-78.4%)를 반영한 증가율(0.2%)을 산출하여 전년 목표치 대비 0.2점 증가한 92.2점을 목표치로 설정	5점 리커트 척도 (100점 만점 환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센터 이용자 설문 조사(E-mail, 전화 등)

* 미디어교육 수료기준은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이 동일(4회차 이상 교육은 70% 이상 출석, 3회차 이하 교육은 50% 이상 출석)

3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Ⅰ-1-③)

□ 추진배경(목적)

○ 신규 매체 등장, 광고시장 축소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중소방송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 기반 조성 필요 증대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하여 '제2차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이 수립('17.12월)됨에 따라 지역방송의 지역성 및 다양성 구현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역·중소방송사의 자체우수 기획 프로그램 선정 및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 지역·중소방송 우수 프로그램의 홍보 및 마케팅 등을 통해 국내·외 콘텐츠 시장 진출 발판 마련

○ 지역방송 종사자 대상 맞춤형 방송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의 고도화 및 자체 제작역량 강화

○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18년~'20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1·2차 지원계획 진단 및 개선사항 발굴을 통한 내실 있는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21년~'23년) 수립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작지원 프로그램 공모·심사(기금지원심사 포함) 및 지원작 선정	2~3월	
	상반기 맞춤형 교육 과정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3~6월	
	해외 피칭포럼 참가 대상 모집 및 교육	3~12월	
2/4분기	상반기 지역방송 재제작 콘텐츠 선정 및 지원	4~6월	
3/4분기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사 현장점검	7~8월	
	하반기 맞춤형 교육 과정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7~12월	
4/4분기	하반기 지역방송 재제작 콘텐츠 선정 및 지원	10~12월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청취자 만족도 조사 실시	11~12월	
	싱가포르 콘텐츠 마켓(ATF) 참가 지원	12월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12월	
연중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연6회 개최	격월 1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지역·중소방송 시청자)** 우수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해 시청자에게 다양한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 등 시청권 강화

- **(지역·중소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유통, 지역방송 종사자 교육 지원을 통해 지역·중소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수익 기반 창출

○ 이해관계자

- **(중앙지상파방송사)** 지역·중소방송 지원 정책이 중앙지상파 방송사와 이해관계 상충 시 양측의 의견조정 및 협조 필요

□ 기대효과

○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 방송품질 향상 및 콘텐츠 경쟁력 제고 →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수익 창출 → 제작비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여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을 실현하는 지역방송 발전기반 마련

○ 고품질의 다양한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송을 통해 지역 시청자 복지향상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1-일반재정①)			
① 방송인프라 지원(3131)		41	40.3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308)	방송통신 발전기금	41	40.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 이행률(%)	-	70	74	78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18년~'20년)의 추진과제인 10대 정책과제 중 '18년도 추진 실적(70%)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매년 5% 확대를 목표로 설정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 10대 정책과제 이행률(%)	사업 결과보고서
방송사 자체제작 투자비율	22.3	30.6	31.7	31	3개년 방송사 자체 제작 투자비율 평균(28.2%)대비 연도별 평균 상승률(3.1%)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 - 최근 3개년 총 제작비 대비 자체제작 투자비율 평균 : 28.2% - 최근 3개년 연도별 평균 상승률 : 3.1%	제작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 자체제작비/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총 제작비) × 100 (%)	사업 최종 실적보고서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Ⅰ-1-④)

□ 추진배경(목적)

○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 예방과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정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발생시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히 전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재난방송등 주관방송사인 KBS의 신속한 재난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한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방송통역 수어 통역사 재교육을 실시하여 공익성 제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73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으로 효율적인 방송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방송 실시 체계 확립

- 지진, 태풍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방송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중계기가 기 설치되어 있지만 수신불량인 터널에 대해 원인을 분석한 후 시설관리기관에 유지보수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여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지원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리정보를 활용한 재난상황 그래픽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KBS가 보유한 재난CCTV 영상을 타 방송사와 공유

○ 재난방송 수어통역 인력 교육 및 확충, 외국인을 위한 영어 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서비스 제공 확대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개정	2월	
	해빙기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3~4월	
	수어통역사 재교육	3~12월	
2/4분기	'19년 3~4분기 재난방송 실시 결과 점검	4월	
	하절기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5~6월	
	지리정보를 활용한 재난상황 그래픽 기술개발	6월	
	KBS 재난CCTV 영상 타 방송사 공유	6월	
	영어자막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서비스 제공 확대	6월	
3/4분기	2020년도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9월	
4/4분기	'20년 1~2분기 재난방송 실시 결과 점검	10월	
	202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0~11월	
	동절기 대비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	11~12월	
	방송재난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11~12월	
	2020년도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기술 컨설팅 완료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 방송서비스에 대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 및 중단 없는 방송서비스 제공

- 주관 방송사 역할·책임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정보 제공과 재난 취약계층 배려한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실시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이해관계자**

- 정부부처(행정안전부 등), 방송사업자(지상파·종편·보도PP 등) :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 전달과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부처와 방송사업자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

□ 기대효과

○ 종합적인 방송재난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방송통신운영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① 방송통신운영지원(7131)	일반회계	13.96 (45.6)	8.26 (45.6)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307)		13.96	8.26
- 방송재난관리 강화		2.5	2.0
- 방송재난관리 활동지원		0.20	0.20
-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 활동지원		0.36	0.36
- KBS 지역(총)국 재난재해 자막속보시스템 개선		4.0	-
- 중계시설 연구용역		6.9	5.7
방송통신운영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① 방송통신운영지원(3135)	방송통신 발전기금	-	19.03 (33.3)
▪ 재난방송 운영지원(307)		-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방송 제작지원		-	1.54
- 재난 재해 행동요령 동영상 제작지원		-	3.0
- 지리정보 융합 재난 그래픽 시스템 구축		-	7.54
- 재난미디어 활용 체계 강화		-	4.00
- 재난 CCTV 개방 활용		-	1.91
-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실시 지원		-	1.0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명)	-	-	신규	100	수어통역사 맞춤형 재교육을 통해 긴급재난 방송시 수어방송의 전국 단위 상시적 대응 체계 구축 및 방송현장의 전문수어통역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	2020년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 인원	내부자료

성과목표 Ⅰ-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지상파 방송 재허가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관련 실적 및 이행계획을 엄정히 심사하고, 재허가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통해 공정성·공익성 제고

○ 2020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보도 방송사를 대상으로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19년도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재승인 심사에 반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17	실적 '18	실적 '19	목표치 '20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 '18년에는 과제 Ⅰ-1-1(방송의 독립성과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의 지표였으나, 목표-과제 체계 개편으로 성과목표 Ⅰ-2의 지표로 변경	-	97.6	100	90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엄격한 점검 결과 '18년과 '19년은 목표치를 추가 달성하였음 다만, 지상파의 경우 '19년은 3개 방송사가 조건부 재허가 의결, 이사의 연임 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엄격한 재허가 조건이 부가되어 방송사업자가 조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90로 설정 종편PP도 '17년 재승인 시 공적책임 관련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였고, 사업자가 자율적인 의지로 이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 × 0.5]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수) × 0.5] * 경영의 독립성, 편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사 등의 장기연임 해소 방안 마련 등 ** 방송의 품격제고 계획 준수, 오보·막말·편파 사유 방송심의위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 심의제재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운영, 법정제재 시 출연정지 조치 등	실적 점검 결과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매체간 경쟁이 심화되어 방송 광고매출 하락 등 경영환경 악화

- 경영 개선을 위해 방송사업자가 광고 영업 등 수익성 개선에 집중함에 따라 방송의 핵심가치인 공적 책임 훼손 우려

○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조건 이행실적 점검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할 필요성 증가

- 특히, 종편PP가 시청률·광고매출액 등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재승인 심사와 종편 특혜 폐지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음

□ 갈등요인

○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나 사업자는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

- 급격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등 곤란

○ 종편PP 관련 정책은 국회·시민단체·일반국민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이가 뚜렷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정부 규제와 방송의 독립성 및 산업 활성화의 조화로운 균형점이 필요

□ 갈등관리계획

○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조건 이행점검시 공적 책무 관련 사항을 적극 점검하고,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사전에 공표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 제고 유도

○ 또한 외부 시민단체·학회·협회 등의 추천을 통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청자 의견청취를 강화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Ⅰ-2-①)

□ 추진배경(목적)

○ 방송매체 다변화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엄격한 재허가 심사 추진

- 또한, '17~'19년도 지상파 재허가시 부가된 재허가조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철저한 이행점검 필요

* 주요 조건 : 경영의 독립성, 편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UHD 편성비율 등

○ 추진근거 :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 전파법 제34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재허가조건 이행점검)** '17~'19년도 지상파 재허가 심사시 부가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관련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 실적 점검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유도

○ **(재허가 심사)** '20년도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9개 방송사업자(156개 방송국, UHD 포함)에 대한 재허가 심사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엄정히 심사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재허가조건 부가 추진

구분	재허가 대상 사업자
DTV, 라디오 (9개사)	수도권(4개사) : KBS, MBC, SBS, EBS 지역MBC(3개사) : 대전·경남·부산MBC 지역민방(2개사) : 대전방송, 케이엔엔
UHD (14개사)	한국방송공사 : 광주·대구·대전·부산총국, 울산국 지역MBC(7개사) : 원주·울산·대구·광주·강원영동·대전·부산MBC 지역민방(6개사) : 대전방송, 케이엔엔, 티비씨, 지원, 울산방송, 광주방송
라디오 (1개사)	미디어재단 TBS(교통, 영어FM)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상파 재허가 심사 세부계획 의결	4월	
2/4분기	지상파 재허가조건 이행실적 접수	4~6월	
	지상파 재허가 신청 사업자 설명회 개최(설명회, 공고 등)	4~5월	
	지상파 재허가 신청서 접수	6월	
3/4분기	지상파 재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불이행 방송사에 대한 제재처분 등	7~8월	
	지상파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기술심사, 법 위반 조회 등	8~11월	
4/4분기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0~12월	
	지상파 재허가 위원회 의결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해 방송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과 민주적 여론수렴 환경조성

○ 이해관계집단

- **(지상파방송사)** 방송법 및 전파법에 따라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허가 조건에 따른 이행실적 제출 의무가 있음

□ 기대효과

○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재허가 심사 및 조건 이행점검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등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지상파방송의 공적책무 제고율(%)	-	-	100	95	o 재허가 사전기본계획 수립시 세부계획으로 위임한 사항 중 실제 세부계획 반영 여부의 목표는 100% o 방송의 공적책임 관련 재허가 조건 이행률의 목표는 국정과제목표와 동일한 90% o 각 과제의 목표를 측정산식의 과제 비율로 환산 - 재허가 세부계획 반영 목표(100%×0.5) + 방송의 공적책임 관련 재허가조건 이행률(90%×0.5)	[(재허가 세부계획 반영 건수/재허가 사전기본계획 수립시 세부계획으로 위임한 건수) × 0.5] +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 × 0.5]	실적자료

2 종편·보도채널의 공적 책무 강화(Ⅰ-2-②)

□ 추진배경

○ 종편PP의 시청률·광고 매출 등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회·시민단체·언론 등에서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엄격하고 공정한 재승인 심사를 요구

* 종편특혜 모두 폐지 요청(언론소비자주권행동 의견서, '19.2.15.), 허위·과장 보도를 하는 TV조선의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245,569명 참여, '19.9월) 등

○ '17년도 종편PP 재승인시 심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 등과 관련하여 재승인 조건**을 부가한 바,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이행점검이 필요

*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확보가 미비하여 출연자의 정치적 편향성, 막말 방송이 계속되고 있어 방송의 품격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오보·막말·편파 사유 방송심의위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 심의제재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운영, 법정 제재시 출연정지 조치, 콘텐츠 투자계획 준수 등

○ 추진근거 : 방송법 제17조, 방송법 시행령 제16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재승인 심사)** 2020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보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하여 재승인 여부를 결정

* TV조선·채널A(20.4.21), JTBC, MBN('20.11.30), YTN,·연합뉴스TV('20.3.31.)

- **(심사위원회 구성)** 외부 시민단체,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13인(심사위원장 포함)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시청자 의견청취)**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년 재승인 심사부터 '국민이 묻는다'*를 도입

* 일반 국민이 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과정에서 해당 법인 대표자 등에게 국민을 대신해 질의

- **(중점심사)**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재승인 여부 결정)**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는 '재승인'을, 650점 미만은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가 가능

○ **(이행실적 점검)** 종편·보도PP 재승인 시 부가한 조건 및 권고사항의 '19년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 점검

- **(조건 및 권고사항)** 방송 심의규정 위반건수 및 검증기구 운영, 다양한 방송 분야의 조화로운 편성, 경영 전문성·독립성·투명성 등

※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종편PP 4개사 38건, 보도PP 2개사 8건

- **(방송사 현장실사)** 콘텐츠 투자 계획 대비 이행실적 등 방송사 제출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사업자 현장실사 실시

- **(외부 자문단)**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방송·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외부 자문단을 구성·운영

- **(점검결과 후속조치)** 점검결과에 따라 조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권고사항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이행촉구 등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년 상반기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3월	
2/4분기	'20년 상반기 재승인 대상 사업자 재승인 여부 의결	4월	
	종편·보도PP '19년도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접수	4월	
	'20년 하반기 재승인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5월	
	종편·보도PP '19년도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자료 검토 등	6~8월	
3/4분기	종편·보도PP '19년도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위원회 보고	9월	
	'20년 하반기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시청자 의견청취	9월	
4/4분기	'20년 하반기 재승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1월	
	'20년 하반기 재승인 대상 사업자 재승인 여부 의결	11월	

※ '20년 종편 재승인 심사는 승인 유효기간의 차이에 따라 상반기·하반기 2회 진행
- TV조선·채널A(20.4.21), JTBC, MBN('20.11.30),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종편·보도PP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통하여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여론 수렴 환경 조성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실적 제출 의무가 있음

□ 기대효과

○ '20년 재승인 대상 사업자인 종편PP 4개사, 보도PP 2개사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 제고 및 시청자 권익 보호

○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조건 부가의 실효성 제고 및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등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종편·보도PP의 공적 책무 제고율(%)	- 신규 100	95	o 재승인 심사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반영한 '20년 재승인 심사제도 운영의 목표는 100% o 재승인 조건 이행률의 목표는 전년도 목표치(85%)보다 5% 상향한 90%로 설정(국정과제 목표치와 동일) o 각 과제의 목표를 측정산식의 과제 비율로 환산 - 재승인 심사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반영한 재승인 심사 운영(100%×0.5) + 재승인 조건 이행률(90%×0.5)	[(재승인 심사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반영한 재승인 심사 운영/'20년도 재승인 대상 방송사 수) × 0.5] +[(방송의 공적책임 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 건수/방송의 공적책임 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수 ×0.5)]	실적자료

전략목표 Ⅱ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점검하고, 이용자 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이용자 권익 증진

○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불법유해정보 및 불법 스팸 유통 차단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그간의 성과

○ 통신이용자와 통신사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의 도입

○ 공정한 망 이용 계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계약의 원칙과 절차, 불공정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마련

○ 자급제 단말기의 공급·구매·가입·이용 단계에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보호 체계 확립, 이용자 역량 및 권리 강화, 공정·상생의 시장 생태계 조성 등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 대책 마련

○ 건물독점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할인반환금을 독점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부담이 없도록 개선

○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절차 완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도모

○ 전 국민 맞춤형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 방지 등을 통해 인터넷상 역기능에 대응

◇ **중점 추진내용**

○ 통신서비스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이용자 보호 강화

○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출고가 인하사례 지속발생 및 자급 단말기의 가격 및 수리비 인하유도

○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이용자 교육 및 정보제공 추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실시 등을 통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 유도

○ 이용자 위치정보 보호와 빅데이터·자율주행, AI, 5G 등 신규 ICT 산업 활성화 간에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계층별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국민 참여형 실천운동 전개 등 인터넷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불법유해정보 및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 **전략목표와 임무 간에 상관성**

○ 지능정보사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 역량 및 권리 강화 등을 통해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6**	**1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을 강화한다.		① 통신·인터넷시장 제재 건수
Ⅱ-1.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		①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건수
	① 상생의 통신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① 통신·인터넷 정책 개선 건수 ② 통신분쟁 신청처리 건수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① 유선시장 전기통신사업법령 준수율
	③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① 단말기유통법 온라인 준수율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	①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률 ②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 만족도
Ⅱ-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팩트체크 결과물
	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위치정보의 안전성·활용 강화	①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 ②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만족도 ③ 임시조치 개선 등 제도개선 달성률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① 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 ②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불법정보 기술적조치 개선율

전략목표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1) 주요내용

□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태계 조성

○ 스팸 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피해 최소화

○ 보이스피싱 등 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안내문자 발송 확대(연 3회 →4회) 및 수시 경보 발령

○ 결합상품 가입과 해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전환 시스템 구축·시행

○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정책연구와 네트워크 기능 수행을 위한 정책센터 설립

○ 모바일 앱결제 관련 민원유형 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마련

○ 5G 도입 등 기술발전에 따른 신유형의 이용자 불편광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AI·빅데이터 활용, 스팸 차단기법 고도화를 통해 차단속도 단축 및 스팸량 감축

○ 온·오프라인 통신분쟁조정시스템 구축, 전문 상담사 충원 등 분쟁조정 역량 강화

□ 신뢰성 있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등 점검 강화

○ 여가부·경찰청·방심위 등과 24시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공 DNA DB를 구축·확대하여 필터링 적용, 필터링 성능평가제 추진 검토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성매매 등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추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대상사업자 확대, 사이버 안심존 상 청소년 이용 시간 총량제, 몸캠피싱 방지 기능 도입

○ 인터넷윤리 캠페인, 공모전 등 국민 참여형 이벤트, 인터넷윤리 체험관 확대,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인터넷 윤리 의식 제고

○ 전국민 대상 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및 보급을 통해 교육의 사각 해소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글 게시자의 반론권 보장, 사이버 명예훼손 법제도 개선

□ 상생과 공정의 생태계 조성

○ 유튜브, 페이스북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

○ 단말기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단말기유통 관련 법령 정비

○ 통신사 전산운영 시간을 줄여(주84시간→주54시간) 유통점 종사자 근무시간 단축 유도

○ 통신·인터넷 분야의 정책갈등 발생 시 집단지성을 활용한 정책수립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24			
통신·인터넷시장 제재건수(건)	-	-	-	-	-	5	과거 실적 및 추세와 '19년도 실적인 4건을 감안하여 '24년에 6건을 목표로 설정 ※ 18년 4건, 19년 4건	연간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상 제재건수 집계	심결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지능정보사회 도래 등 통신환경 변화로 인한 신규 서비스 출현, 서비스의 복잡·다양화로 이용자 피해 예측이 어려움

○ 방송통신시장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조사가 요구되나, 인력 및 예산 등에 한계

○ 다크웹, 딥페이크 등 진화하는 불법정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및 인터넷 이용환경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필요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 Ⅰ-1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1) 주요 내용

○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분쟁조정 성과 확산 및 대외 인식 제고

○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조사·제재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공정경쟁 질서 확립

○ 이통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중소 유통점 보호 정책 추진

○ 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문자메시지 발송, 무선데이터 정보제공 등을 통한 이용자 역량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건수(건)	8	8	8	8	유·무선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마련 등은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므로 동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통한 개선실적	내부자료, 상정안건, 실태점검 보고서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지능화 혁신역량을 갖춘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 개편,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플랫폼·동영상 시장 잠식 지속

○ 국내 방송통신 기업간 인수합병(M&A), 제휴 등 합종연횡 본격화

○ 1인 미디어 활성화 등으로 이용자가 콘텐츠 소비의 주체에서 생산의 주체로 위상 변화

○ 5G 기반의 대용량 콘텐츠 이용과 5G 단말 가격 등으로 인해 통신비 부담 가중 우려

○ 신기술 기반의 시장 선점 경쟁이 심화되어 무단가입, 자동연장 등 이용자 피해발생

□ 갈등요인

○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요구와 중소CP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 공존

○ 지원금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자율성 확대, 깨끗한 유통망 거래 환경 조성, 이동통신 유통망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상존

□ 갈등관리계획

○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제제는 강화하되,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

○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조화로운 이용자 보호정책과 공정경쟁정책을 추진

○ 이용자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이용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능동적·적극적 이용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제공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상생의 통신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Ⅰ-1-①)

□ 추진배경(목적)

○ 지능정보시대에 맞추어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포용적 디지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상생발전 방안 필요

-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사업자, 협회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관련 의제를 논의

○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성과 확산 및 대외 인식 제고

○ AI, 자율주행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의 기회 제공 방안, 공유·구독형 경제에서의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

○ 전문적인 피해상담을 위한 통신분쟁 조정 접수센터 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사건 조회가 가능한 분쟁조정 지원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 플랫폼, 인공지능 IoT, 공유경제 확산 등 지능정보시대에 급변하는 통신·인터넷 환경을 반영하여 중장기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 방송통신 조사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과 조사관 교육 등 실시

○ 과징금 환급가산금 산정요율을 고정요율(6%)에서 시중 금리동향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법·망법 시행령 개정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재정사건 접수 및 처리	연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월	
	재정사건 관련 TF 구성·운영	2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연중	
2/4분기	통신분쟁조정접수센터 구축·운영	4월~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6월~	
3/4분기	조사관 전문 교육 실시	9월	
4/4분기	통신분쟁 조정 사건 시스템 구축	12월	
	통신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통신분쟁 당사자)** 이용자와 통신사업자와의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여 양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 절약

○ **이해관계자**

- **(통신·인터넷 사업자)** 통신·인터넷 시장의 공정 경쟁, 상생 협력 방안 마련 등은 국내외 사업자 간, 그리고 통신사와 인터넷 사업자 간 첨예한 이견 발생

□ 기대효과

○ 이용자 등이 전문가 상담, 사건접수·조회·진행현황 등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어 원만한 분쟁 해결 도모 및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

○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터넷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9	'20
방송통신운영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① 방송통신운영지원(7138)	일반회계	4.9 (45.6)	1.0 (41.71)
▪ 행정사무정보화(308) - 방송통신조사시스템 운영		4.9	1.0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Ⅰ-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일반회계	- (178.92)	6.6 (187.58)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301) -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	6.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통신·인터넷 정책 개선 건수(건)	-	-	신규	3	통신·인터넷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19년 이용자정책총괄과 제도개선 실적(2건)*에서 150% 상승시킨 3건을 목표로 설정 *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등 2건	정책개선 건수를 결과물로 실적 산정	정책 개선 관련 위원회 안건, 보도자료 등
통신분쟁 신청처리 건수(건)	-	-	신규	112	'19년 실적(102건) 대비하여 10% 상향하여 설정	통신분쟁 조정 처리 건수	통신분쟁조정 신청처리 건수(Email, 우편 등)

2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Ⅱ-1-②)

□ 추진배경(목적)

○ 급변하는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조사·제재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공정경쟁 질서 확립 및 이용자 이익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결합시장의 경제적 이익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 실태점검 실시('20.2월)

○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 인수·합병 등 알뜰폰 시장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알뜰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20.3, 9월) 및 이통사-알뜰폰 도매제공에 대한 실태점검('20.8월)

○ 유선시장 유통구조 건전화와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자율준수협의체 운영('20.5월)

○ 신규서비스 가입과 기존서비스 해지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Onestop Switch-System) 구축 및 시행('20.7월)

○ 집합건물 독점계약 관련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해지위약금 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기준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제도개선 추진('20.10월)

○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광고 사실조사('19.11~12월) 결과를 반영하여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및 예방교육실시('20.5~7월)

○ 대형플랫폼으로부터 크리에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 등록, 수익배분 등에서 불합리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갈등사례, 시장구조 등 시장현황을 분석('20.5월)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20.12월)

○ 포털 및 앱마켓 등 인터넷플랫폼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20.9월), 국내외 규제정책 및 사례 등 모니터링(연중)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제적 이익 제공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 실태점검 실시	2월	
	집합건물 독점계약 실태점검 실시	3월	
	알뜰폰 시장 현황 모니터링(1차)	3월	
2/4분기	허위 과장광고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가이드라인 개정	4월	
	플랫폼과 크리에이터간 갈등사례, 시장구조 등 시장현황 파악	5월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자율준수협의체 운영	5월	
	허위 과장광고 방지교육	5~7월	
3/4분기	원스톱 전환시스템 도입 및 시행	7월	
	알뜰폰 도매제공 실태점검	8월	
	알뜰폰 시장 현황 모니터링(2차)	9월	
	포털, 앱마켓 등 인터넷플랫폼시장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9월	
4/4분기	집합건물 독점계약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10월	
	원스톱 전환 이행 실태점검	10월	
	플랫폼과 크리에이터간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2월	
연중	유선결합시장 및 인터넷플랫폼시장 모니터링	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혜택 수혜

※ 유선통신서비스(인터넷, IPTV 등) 가입·이용·해지 신청자 등(전국민)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통신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플랫폼사업자 등

□ 기대효과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통해 이용자 이익 제고

○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경쟁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제한을 통해 경쟁 열위사업자의 부당한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Ⅰ-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일반회계	20.59 (178.92)	20.13 (187.58)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302)		20.59	20.13
-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분석체계 운영		0.81	1.11
- 인터넷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2.42	2.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유선시장 전기통신사업법령 준수율(%)	82.0	84.2	84.8	85.4	2개년(‘17~’18년) 실적치와 목표치를 고려하여 0.6%p상향	[(경품가이드 준수율+허위·과장 광고 가이드준수율) /2] 100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③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Ⅱ-1-③)

□ 추진배경 (목적)

○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중소 유통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추진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이통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권익 증대 및 유통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 구성·운영(~'20.7월)

- 단말기 유통법 제도개선(안) 위원회 보고 및 법령 개정 추진(~'20.12월)

○ **(상생협력 강화)** 이동통신유통시장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유통점 종사자 보호 등을 위해 이통 3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간 상생협의회 구성·운영(연중)

- 유통점 종사자의 근무여건 완화를 통한 삶에 질 향상을 위해 전산 운영시간 단축 추진(~'20.7월)

- 이통시장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통사의 과도한 차별적 판매수수료 축소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상생방안 도출(~'20.11월)

○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 및 이용자혜택 확대정책 지속 추진

- **(단말기 국내외 가격 비교 공시)** 주요 플래그쉽 및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17개국의 단말기 가격을 지속 비교·공개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소비와 사업자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연중)

- **(현상경품 기준 개선)** 경품횟수 연속사용 기준 완화 및 페널티·인센티브 기준 마련 등 경품기준 개선안 마련 및 시행('20.1월)

○ **(단말기유통시장 안정화)** 환경 변화에 따른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감시 강화 및 제도보완

-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시정조치(~'20.6월) 및 신규단말기(갤럭시S20 등) 출시 관련 예상되는 이용자의 피해·시장과열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연중)

- 이동통신 시장의 혼탁·과열 및 유통점간 과도한 차별을 조장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에 대해 조사를 통해 시정·개선(연중)

○ **(중소유통점 보호를 위한 환경개선)** 온라인 유통점(일명 '성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골목상권 소재 중소 유통점의 사업환경 개선

-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 위치한 판매점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불·편법 영업점의 시장진입을 사전 차단하도록 사전승낙서 관리기준 마련 및 시행('20.2월)

- 온라인 유통점의 신분증스캐너 부정사용 등에 대한 자율 현장점검·자율제재(~'20.5월)

○ **(이동전화 사기피해 예방 및 지원)** 이동전화 단말 유통시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사기 피해자 지원 활동 추진

- **(피해예방 홍보)** 사기 피해 예방 포스터의 유통점 배포·부착, 청약시 피해 안내문 공지 및 개통 이용자에 대한 주의 문자 발송 등(연중)

- **(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 상담원을 통한 사기피해자 대상 대처방안 안내 및 필요시 법률자문 제공 등('20.6월~)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연중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비교	연중	
	현상경품 기준 개선안 마련 및 시행	1월	
	사전승낙서 관리기준 마련 및 시행	2월	
2/4분기	신분증스캐너 부정사용 등에 대한 자율 현장점검·자율제재	5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제재(~6월) 및 현장계도(연중)	6월	
	이동전화 사기피해 예방 및 피해 지원	6월	
3/4분기	유통점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전산 운영시간 단축 추진	7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 구성·운영	7월	
4/4분기	이통사의 과도한 차별적 판매수수료 축소 등 상생방안 도출	11월	
	단말기유통법 제도개선(안) 위원회 보고 및 법령 개정 추진	12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 시정·개선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 단말기 불법 지원금 등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해소,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등 통신비 경감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

○ 이해관계자(통신사업자)

- 단말기유통법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유통점 등

□ 기대효과

○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을 서비스와 요금에 기반한 경쟁으로 유도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Ⅰ-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2141)	일반회계	20.59 (178.92)	20.13 (187.58)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302)		20.59	20.13
-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16.14	15.73
- 이동통신 단말기 국제비교		1.22	1.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단말기유통법 온라인 준수율(%)	-	-	80.3	81.5	온라인을 통한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존재하고, 오프라인 준수율의 경우 목표치가 100%에 가까운('19년 실적 95.4%) 점을 감안하여 위반율이 높은 '단말기유통법 온라인 준수율'로 목표 선정 ※ '17년(77%), '18년(78.5%), '19년(80.3%) 실적치와 점진적인 법 준수율 향상을 고려하여 전년 목표(80.0%) 대비 1.5%p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준수 건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총 건수) ×100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Ⅱ-1-④)

□ 추진배경 (목적)

○ 5G, IoT 등 신서비스의 등장 등 통신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의 복잡·다양화에 대비한 이용자 교육 강화 필요

○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 정비 및 금지행위 위반여부 점검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 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문자메시지 발송, 무선데이터 정보제공 등을 통한 이용자 역량 강화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교육대상 확대, 및 전문 강사단 육성과 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이용자 맞춤형 교육 강화

- 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문자발송 횟수 확대 및 금융위, 통신사 등 관련 민·관 협업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급변하는 방송통신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건전하고 안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이용자보호주간 행사 개최

- 이용자의 사용량이 높은 앱 및 홈IoT서비스 앱을 대상으로 합리적 데이터 사용 제고를 위한 데이터 소모량 측정 및 정보제공

○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확대,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이용자 보호기반 조성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법령에 따른 이용자 의무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개선

※ '19년 시범평가 대상 사업자(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에 대하여 본 평가 실시

- 모바일 콘텐츠* 가입-이용-취소(환불) 단계별 이용자 피해예방 및 플로팅 광고(돌출형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안) 마련 추진

* 앱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의 유료·인앱결제 어플, 월정기결제형 OTT,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등

-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점검

※ 돌출광고(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타인명의 휴대폰 불법 개통, 모바일 앱결제(OTT, 이통사 부가서비스) 등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여부 점검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이통사 본인확인 앱 관련 부가서비스의 중요사항 고지 여부 점검	2월	
	데이터소모량 측정대상 국민생활밀접형 앱 선정	3월	
	플로팅 광고 제도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반 구성· 운영	3~12월	
2/4분기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재 제작 및 강사단 발대식	4월	
	모바일 콘텐츠 앱 결제 가이드라인 개정 연구반 구성· 운영	4~12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 수립	5월	
	국민생활밀접형 앱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및 결과 공개	6월	
3/4분기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	7~9월	
4/4분기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주간 행사 개최	10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공개	10월	
	플로팅 광고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안) 마련	12월	
	모바일 콘텐츠 앱 결제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12월	
연중	대국민 통신금융범죄 피해예방 정보제공	수시	
	모바일 콘텐츠 앱 결제 및 플로팅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연중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연중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 장·노년층,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정보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 역량강화 및 편익 증진

○ **(이해관계자)** 통신사업자

-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확대, 이용자 피해구제 기준 공유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권익보호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정보취약계층 등 이용자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한 이용자 역량강화 및 권익 제고

○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OTT, 부가서비스에 대한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환경 조성

○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로 자유로운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보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Ⅰ-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일반회계	25.93 (178.92)	21.16 (187.58)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301)		25.93	21.16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16.81	15.97
-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0.65	0.62
-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4.97	4.5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률(%)	14.7	15.2	16.3	17	‘19년도 실적(16.3%) 대비 0.7%p 상향한 17%로 설정	[(계층별 교육후 역량 점수 - 교육전 역량 점수) / 교육전 역량점수] x 100	교육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집계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 만족도(점)	75.7	82.2	81.9	80.5	‘17~’19년 평균 만족도는 79.9점이나 연도별 편차가 있으므로 3개년 평균 만족도 대비 0.6점 상향한 80.5점으로 설정	∑이동통신사업자 만족도 점수 / 이동통신사업자 수	보호업무 평가대상 이동통신사업자의 피해예방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성과목표 Ⅱ-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빅데이터, 자율주행, AI, 5G 등 신규 ICT 분야에서 위치정보가 보호되는 동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개선 추진

○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도모

○ 전국민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 실시, 범국민 참여형 캠페인 전개, 불법유해정보 차단 강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 스팸의 전송경로가 점차 다양해지고 기법이 보다 지능화 됨에 따라, 스팸의 발생 및 유통을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현장점검 및 기술적 대응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팩트체크 결과물(건)	-	-	신규	16	팩트체크 결과물 목표치는 2주간 1건의 결과 도출을 목표로 16건으로 산출 (5월~12월)	팩트체크 결과물 건수	결과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사이버공간 확장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경로가 다양화되고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빅데이터, 자율주행, AI, 5G 등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사업화 요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유출, 오용 및 남용에 대한 우려 증가

○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이행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 절차의 복잡성(48.2%), 전문인력 부족(43.4%), 기술적·전문성 부족(36.3%) 순으로 나타남(2018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해외 주요기관·국가(EU,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등)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자격제도 운영 중

○ 스마트기기 이용 확산과 새로운 ICT신기술 발달에 따라 사이버폭력 및 불법유해정보 등 인터넷 역기능 확산 등 사회문제 대두

○ 인공지능 등 ICT신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디지털역기능 및 이로 인한 사회문제와 사회갈등 발생

※ AI 윤리, 개인정보수집,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확산 등

□ 갈등요인

○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우, 위치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법제도를 미준수하는 사례 발생

○ 지나치게 엄격한 위치정보 규제는 빅데이터의 활용을 기본으로 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걸림돌로 작용

○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이 연간단위로 진행됨에 따라 이슈의 적시 대응이 어려움

○ 산업발전 초기단계인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 이용자, 정부 간의 입장차이 발생

○ 최근 다양한 사회적 범죄가 온라인 스팸으로 시작되는 경향에 따라, 스팸은 '성가신 마케팅'이라는 인식을 넘어,

- 불법도박 유도,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전갈취, 불법 의약품 판매, 불법 통장·계좌거래, 음란물 유통 등 '범죄의 창구'로 악용

□ 갈등관리계획

○ 사업자가 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법적 의무 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 실시

○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분야에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정비 및 개선

○ 분기별 이슈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개선, 신규콘텐츠 개발주기를 단축하여 교육의 시의성·효과성 제고

○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실천대안 모색

○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유발하는 불법스팸 발송을 억제하고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스팸 대응 노력 강화 필요

○ 스팸을 통한 도박, 대출사기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제기관에 스팸데이터를 개방하고 불법스팸 전송자 규제 단속 강화,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스팸방지 인식제고 설명회 등 개최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위치정보의 안전성·활용 강화(Ⅱ-2-①)

□ 추진배경 (목적)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운영 확대를 통해 불법스팸 유통을 최소화 하고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해소 추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 인식제고 등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

-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생활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 도모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임시조치 및 사이버 명예훼손 등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불법스팸 대응 》

○ 휴대전화 및 이메일의 스팸유통 현황 분석·공개(연 2회)를 통해 스팸감축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유도

○ 전화권유판매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스팸 전송자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및 사업자 대상 스팸 방지 인식제고 설명회 개최, 이용자 대상 스팸 피해 예방 교육 실시(연중)

○ 도박중독·대출사기 등 국민의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규제기관에 데이터 제공을 위한 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 위치정보 정책 》

○ **(제도 개선)** 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자의 인식 제고 위한 교육 지원

- 규제완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 및 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및 해설서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위치정보사업자의 인식제고 및 실천 제고를 위한 위치정보 보호 조치 교육 운영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및 지원

- (서비스 개발 지원) 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의 위치기반 스타트업을 모집하여 서비스 개발 환경(클라우드 인프라) 및 고도화 컨설팅 지원

- (서비스 사업화 지원) 서비스 상용화·사업화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 중 우수 서비스를 선정하여 투자유치, 비즈니스 네트워킹 확대 등 사업화 지원

- (해외 판로 지원) 해외 진출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을 모집하여 중국·베트남 등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현지 네트워킹 확대 등 지원

- (사후 관리) 이전 공모전 수상자 대상 컨설팅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확대 등 사후관리 및 성과 조사 실시

- (산업규모 파악) 국내·외 위치정보 관련 법·기술·서비스 동향 조사 및 위치정보 산업 실태조사 실시

○ **(긴급구조 강화)**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운영을 통해 요구자의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제공

- 위치정보 전달 체계상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증시험을 실시하고, 품질측정 대상지역 및 평가지표(측위 정확도, 성공률 등) 등을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위치정보 품질제고 유도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스팸 데이터 개방을 통한 2차 피해 예방 추진 보도 ※ 금융 사기 범죄예방을 위한 MOU 체결(금감원 및 15개 은행 등)	1월	
	이용자 대상 스팸피해 예방 교육 실시	2~3월	
	'20년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준수여부 현장점검 계획 수립·실시	2월~	
	'19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	3월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운영	1~12월	
	국내·외 위치정보 산업 동향 보고서 발간 및 배포	1~12월	
2/4분기	이용자 대상 스팸피해 예방 교육 실시	4~6월	
	'20년 상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6월	
	사업자 대상 상반기 스팸방지 인식제고 설명회 개최	6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추진	4~6월	
	우수 비즈니스 모델 대상 성과 조사 추진	5~11월	
	위치정보 공모전 수상자 대상 컨설팅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사후관리	5~11월	
	긴급구조 위치측위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실증시험	5~12월	
	임시조치 제도 개선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6월	
3/4분기	이용자 대상 스팸피해 예방 교육 실시	7~9월	
	'20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	9월	
	우수 비즈니스 모델 대상 사업화 지원 추진	7~12월	
	위치정보 이용 등 위치정보법에 대한 이용자·사업자 인식 제고 및 홍보	7~9월	
	임시조치 및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9월	
4/4분기	이용자 대상 스팸피해 예방 교육 실시	10~11월	
	'20년 하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11월	
	사업자 대상 하반기 스팸방지 인식제고 설명회 개최	11월	
	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12월	
	대용량문자 스팸 간편신고 시스템(v4.0) 개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예비·스타트업 위치정보사업자) 공모전을 통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에 사업화를 지원하여 신규 위치기반 서비스 발굴

- (중소·영세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컨설팅 및 산업관련 동향정보 제공

- (일반국민) 긴급 구조시 요구자 위치정보의 품질을 향상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 지원,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스팸으로부터 야기되는 피해 예방

○ 이해관계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자의 위치정보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활용 가능

- (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사업자의 위치정보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개인·위치정보 침해사고 등 근본적 예방

□ 기대효과

○ 불법스팸 차단 대응 강화로 불법 스팸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현황 공개를 통한 통신사의 자발적인 스팸 감축 대응 유도 및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

- 이용자에게 불편과 짜증을 유발하고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여 시간낭비와 생산성 감소를 야기하는 불법스팸 발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박중독·불법대출 사기 등 2차 범죄 피해 방지

○ 제도개선을 통해 위치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문화 확산을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과 인터넷 역기능 최소화에 기여

-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시자와 권리침해주장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 공익에 관한 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 구축(Ⅰ-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 구축(2141)	일반회계	30.93 (178.92)	30.93 (187.58)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309)		30.93	36.79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Ⅰ-1-일반재정①)			
①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2141)	일반회계	4.40 (178.92)	2.66 (187.58)
▪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307)	일반회계	4.40	2.66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Ⅰ-2-일반재정①)			
② 안전한인터넷정보활용기반구축(3251)	기금	37.88 (102.32)	25.88 (112.69)
▪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304)	기금	12.88	12.88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기반 구축(311)	기금	15.00	13.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통) (하향지표)	신규	15	16	15	최근 3년간 실적 평균 및 연평균 증감율, 정책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15통으로 목표를 설정함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각 1,500명 대상 1인당 월 평균 수신량 측정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만족도(점)	89.4	89.8	90.7	90	사업수혜자 대상 행정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안내 및 정보 제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	(신규 B/M 발굴 사업화 지원 수혜자만족도 ×0.5)+(오프라인 컨설팅 수혜자 만족도×0.5)	사업화 지원 및 컨설팅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만족도 조사
임시조치 개선 등 제도개선 달성률(%)	-	-	-	70	- 악성댓글, 사이버 명예훼손 등 인터넷 역기능이 심각하여 표현의 자유 증진과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제도개선안 마련이 필요함 - 단, 표현의 자유 증진과 동시에 인터넷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개선안은 허위조작정보 개선 등 인터넷 환경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제도 개선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도개선안 마련('20년)과 국회 통과('22년)를 목표로 선정 - 단, 20년 제도개선안 마련의 측정산식은 [제도개선안 마련(0.5)+(임시조치 개선 등 입법지원 횟수/목표)×0.5]로 선정 * 입법지원 목표 4회	제도개선안 마련(70%) - [제도개선안 마련(0.5)+(임시조치 개선 등 입법지원 횟수/목표)×0.5]×100 국회 제출(의원입법 포함)(75%) 상임위 소위 통과(80%)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85%) 법사위 소위 통과(90%)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95%) 국회통과(100%)	제도 개선 달성률

2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Ⅱ-2-②)

□ 추진배경(목적)

○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및 범국민 참여형 캠페인 등을 통해 올바른 인터넷 이용 및 건전한 인터넷윤리 문화 조성

○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정보 유통 차단 및 음란·폭력 등 청소년유해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을 통한 인터넷 상 역기능 대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국민 대상 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 추진

- 유아, 청소년, 성인 등 대상별 인터넷 이용행태를 고려한 맞춤형·체험형 인터넷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 국민 대상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 확대 실시

＊ 연차별 인터넷윤리교육 목표 : ('20년) 18만명 → ('21년) 19만명 → ('22년) 20만명

- 초·중·고 교사 및 상담사, 유치원 교사, 지역아동센터 관리자 등 교육매개자 대상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과정 확대 운영, 지도서 배포 등 추진

○ 국민 참여형 캠페인·홍보를 통한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

- 대중 친화적 온라인 플랫폼, SNS 등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국민 참여형 온라인 캠페인 강화 및 디지털 홍보물 제작·확산

-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대응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터넷 윤리체험관 및 사이버윤리체험관을 운영

○ **온라인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유해정보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사업자 등)의 기술조치 현장점검 강화

-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전문팩트체커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민 대상 팩트체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기반 마련

○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 보호**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확대 추진

※ 집계방식 개선 : ('19년) pc웹사이트 → ('20년) pc웹사이트, 모바일앱

-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마련 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

-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근 차단 및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심존 기능 개선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앱에 이용시간 자율 조절기능 및 몸캠피싱 방지기능 도입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정책 추진**

-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운영을 통해 지능정보시대 이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워크 운영

-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실천방안 논의

-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국제컨퍼런스 연례 개최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	1~2월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및 운영	1~12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	2월	
	사이버안심존 참여학교 운영 확대	3~12월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2월	
2/4분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사업자 선정 및 통보	4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관련 민관협의회 발족 및 운영	4~12월	
	온·오프라인 인터넷윤리 홍보	5~12월	
	전국민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추진	5~11월	
	인터넷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개최	6~10월	
	인터넷윤리교육·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5~12월	
	사이버안심존 몸캠피싱 방지기능 도입	6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점검	4~6월	
3/4분기	교원 등 대상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직무연수과정 운영	7~11월	
	취약계층 대상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8~10월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실시	9~10월	
	사이버안심존 이용시간 자율 조절기능 도입	9월	
4/4분기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점검	10~12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구축	10월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마련 및 아동·청소년 보호 종합대책 수립	10월	
	팩트체크 관련 시상식 지원	12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관련 국제컨퍼런스 개최	11월	
	인터넷윤리대전 개최	12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 운영	12월	
	인터넷윤리체험관·사이버체험관 신규 개소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수혜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 17개 시·도 교육청, 유아·초등, 청소년, 학부모 등 전 국민

- 통신사업자 및 포털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 AI 스피커 등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

□ 기대효과

○ 대상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및 범국민 참여형 캠페인 등을 통해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 및 인터넷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갈등 예방

○ 웹하드 사이트 상 건전하고 적법한 콘텐츠 유통 및 이용환경 구축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환경 조성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연구 체계 마련 및 이해관계자와의 정책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기반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 구축(Ⅰ-2-일반재정①)			
①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 구축(3251)	방송통신발전기금	70.94 (102.32)	83.31 (112.69)
▪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306)		12.25	13.15
▪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307)		44.87	50.87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308)		5.50	8.00
▪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314)		8.32	11.29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Ⅱ-1-일반재정②)			
②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방송통신발전기금	- (665.08)	6.1 (680.03)
▪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317)			6.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구분	'17	'18	'19	'20			
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점)	-	86.9	87.2	87.5	88.1	o '19년도 실적치(87.7)에서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증가폭(0.3점)을 고려하고 도전적으로 0.1점을 더해 0.4점 상향한 88.1점으로 목표치 산정	교육수혜자를 대상으로 교육종료 후 만족도 조사	전문 조사업체 위탁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survey))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불법정보 기술적 조치 개선율(%)	-	-	신규	130.6	100	o '19년 기술적 조치 개선(삭제) 실적인 103,825건의 130%인 136,000건을 목표로 설정 * 기술적조치 상시점검 인력 증원('19년 18명 → '20년 30명) 반영 o '19년도 실적인 53,905건의 103%인 56,000건을 불법음란정보 특징값 제공(방심위) 목표로 설정	[(상시점검 등을 통한 기술적 조치 개선(차단) 건수/목표) x0.5] x100 + [(불법음란정보 특징값(해시, DNA) 방심위 제공건수/목표) x0.5]x100	실적보고서

전략목표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장시간 근로 및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권익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 심화로 방송프로그램의 막말·선정·폭력 등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저하 우려

○ 미디어 융합, 신규 서비스의 등장 등 방송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방송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개선 필요

○ 유료방송사업자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콘텐츠 사업자 간, 홈쇼핑 방송사-납품업자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시정 필요

- IPTV 사업자의 SO 사업자 인수·합병에 따라 통신시장에서의 경쟁구도가 유료방송시장으로 전이되는 등 방송시장 변화 파악 필요

○ 한류 방송콘텐츠가 기존 아시아 위주의 시장을 넘어, 미주·유럽, 중동·중남미 등 전세계 방송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기반 마련 등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 최근 매체이용 행태 변화로 총광고비에서 방송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으로, 광고시장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 성장 동력 확보 필요

* 온라인 광고 : ('11년) 19.8% → ('18년) 43.2%
방송광고 : ('11년) 38.6% → ('18년) 25.3%

- 방송광고·협찬고지 제도개선을 통해 광고시장 및 방송산업을 활성화하여 시청자의 방송콘텐츠 향유권을 증진

○ 온라인·모바일로 광고시장 중심이 이동하면서 프로그램 제작 주요 재원인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 그간의 성과

○ 방송 관계자 교육 등 방송사 자체심의 지원, 우수 프로그램 시상, 고품격 방송언어 사용 캠페인(자막고지, 공익광고) 등을 지속 실시

○ 장애인방송 의무제도 도입('12년)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수어·화면해설)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12년~'16년)하고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등을 통해 시청각장애인 시청편의 제공

○ 방송시청행태가 고정형TV를 통한 실시간 시청 외 스마트폰・PC・비실시간(VOD) 시청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시청점유율 조사 영역을 확대하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추진

- 통합시청점유율 시범산정 및 결과 검증('17~'19년), 통합시청점유율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 검토 중

※ 향후 통합시청점유율을 법적제한 기준으로 활용

○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등 방송사업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으로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한-베트남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및 발효, 신남방(베트남·태국·인니), 신북방(중국·러시아·터키), 미주(캐나다·메르코수르) 등 공동제작협정 체결 대상 국가 다각화 추진

-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 시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국내물 인정을 통한 수출증대, 제작기술 노하우 공유 및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와 「한-아세안 방송콘텐츠의 미래와 협력방안 심포지엄」(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 개최, 「국경 없는 방송콘텐츠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발족

- 국내외 사업자 간 실질적 매칭기회 제공, 한류 방송콘텐츠 홍보·판로 확대, 아세안 국가 간 방송콘텐츠 교류 확산,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확보

○ 광고총량제 시행(방송법 시행령 개정, '15.9월), 협찬고지 시간·횟수 등 형식 규제 완화(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6.3월, '18.10월), 가상광고 허용 범위 명확화(방송법 시행령 개정, '16.5월)등 방송광고·협찬고지 규제 개선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구분	제작지원			지원기업 매출증가(%)	방송광고 집행액(억원)
	TV광고	라디오광고	계		
2018년	52	45	97	27.3	206
2019년	43	32	75	20.9	162

◇ 중점 추진내용

○ 방송 출연 아동의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방송사의 준수를 통해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등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 및 막말·선정·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자체심의 역량 강화 등 고품격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방송수신기(TV)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등 방송취약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 다변화된 시청행태를 포괄하는 조사를 실시하여 시청점유율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방송 다양성 보장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사실조사, 시정명령,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제고

○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협찬고지 제도개선을 통해 제작 재원을 확충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방송광고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컨설팅 제공 등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 **전략목표와 임무 간의 상관성**

○ 아동·청소년의 방송 제작 환경 및 장애인의 방송이용 환경 개선, 방송 프로그램 자체 심의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방송 환경 조성 및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규제하여 미디어 영향력 독과점 방지 및 미디어 다양성 구현

○ 방송광고·외주제작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상생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여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미디어 복지 증진

○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다변화를 통해 중국 등 해외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 축소 및 지속적인 방송한류를 견인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 제작 확대를 통해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6	6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I.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시청각장애인 TV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방송프로그램의 품격향상도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개선건수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방송산업 발전 기반 구축도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콘텐츠 제작 활성화 기반 조성률
	②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성과도
	③ 시청점유율 조사 타당성 제고	시청점유율 조사 신뢰성 개선도

전략목표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1) 주요내용

○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막말·선정·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자체심의 역량 강화

○ 시·청각 장애인 등이 방송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접근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구현

○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

○ 캐나다・태국 등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방송공동제작 협정을 추진하고, 국제 방송공동제작 콘퍼런스 및 우수 공동제작물 시상・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행사 등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 최근 매체이용 행태 변화로 총광고비에서 방송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으로, 광고시장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 성장동력 확보 필요

* 온라인 광고 : ('11년) 19.8% → ('18년) 43.2%
방 송 광 고 : ('11년) 38.6% → ('18년) 25.3%

○ 방송광고·협찬고지 제도개선을 통해 광고시장 및 방송산업을 활성화하여 시청자의 방송콘텐츠 향유권을 증진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방송광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컨설팅 제공 등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24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조원)	-	-	신규	16.5	17.3	20.8	'15~'18년 실적(과년도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의 연평균증가율(3.78%) 적용	과년도 지상파방송·지상파DMB·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장시간 근로 및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권익보호 필요성이 국회 등에서 제기

-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 심화로 방송프로그램의 막말·선정·폭력 등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저하에 대한 시청자의 우려 증대

○ 미디어 융합 및 OTT, 넷플릭스 등 신규 서비스의 등장으로 방송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접근성 개선 필요

○ 한류 방송콘텐츠가 기존 아시아 위주의 시장을 넘어, 미주·유럽, 중동·중남미 등 전 세계 방송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기반 마련 등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 갈등요인

○ 방송 출연 아동의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는 과정에서, 방송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방송사의 반발 우려

- 관계기관 협의체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사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방송의 공공성·공공성 강화 관련, 과도한 방송 내용 심의 및 제재로 표현의 자유 위축 및 방송프로그램 수준 저하 우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와 병행하여,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및 심의자료 공유 등을 통해 방송사의 규제 예측가능성 및 자체심의 역량 제고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TV 누적보급률이 높아질수록('20년 90% 목표) 보급대상자 추가 발굴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 대상자 선정(소득정보, 장애정보 등)을 위한 관련 기관 정보공유 필요

- 저소득 시·청각장애인에 방송수신기 보급 확대를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 및 관련부처와의 업무협력 강화, 맞춤형 홍보, 신청 편의 제공 등 추진

○ 장애인방송의 질적 수준 제고, 방송접근 개선을 위한 신규서비스 도입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의 어려움 및 방송사 지원 요구

-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의 제작여건 등을 고려한 제작비 추가 재원 확보

○ 방송광고·협찬고지 제도개선은 방송사업자의 고품질 콘텐츠 제작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나, 타 매체 광고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관련 법령 개정 시 방송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 설득

○ 벤처 등 인증*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므로 지원 대상이 일부로 제한되며, 중소기업이 방송광고 제작 후 광고 송출비에 대한 부담으로 방송광고 활용에 한계

* 산업부·중기청 내부 기준에 따라 관련 협회 등에서 중소기업으로 인증

-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방송광고 관련 교육을 통해 여러 미디어렙의 송출비 할인 제도 등을 소개하여 제작한 방송광고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 III-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막말·선정·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의 자체심의 역량 강화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방송수신기(TV) 보급 및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 방송취약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

○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사례 점검·조사 등을 통한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시·청각장애인 TV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	57.7	69.7	83.5	90	누적보급률 증가에 따른 지표 난이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21년 100% 보급 목표(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전년 목표대비 10% 이상 상승한 적극적 목표치 설정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누적 보급대수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수) × 100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통계자료, '20년 시·청각장애인 TV 보급 현황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장시간 근로 및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권익보호 필요성이 국회 등에서 제기

-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 심화로 방송프로그램의 막말·선정·폭력 등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저하에 대한 시청자의 우려 증대

○ 미디어 융합 및 OTT, 넷플릭스 등 신규 서비스의 등장으로 방송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접근성 개선 필요

○ 유료방송시장은 ’95년 유선방송(SO) 서비스 출범 이후 가입자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08년 IPTV 사업자 진입 이후에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가입자 확보 등 경쟁 심화

○ 홈쇼핑은 상품판매로 인한 수익으로 수요가 높은 반면, 과점 구조의 승인사업자로 이루어짐

□ 갈등요인

○ 방송 출연 아동의 권익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는 과정에서, 방송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방송사의 반발 우려

- 관계기관 협의체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사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방송의 공공성·공공성 유지 관련, 과도한 방송 내용 심의 및 제재로 표현의 자유 위축 및 방송프로그램 수준 저하 우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와 병행하여, 방송사 심의 책임자 회의 및 심의자료 공유 등을 통해 방송사의 규제 예측 가능성 및 자체심의 역량 제고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TV 누적보급률이 높아질수록(’20년 90% 목표) 보급대상자 추가 발굴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 대상자 선정(소득정보, 장애정보 등)을 위한 관련 기관 정보공유 필요

- 저소득 시·청각장애인에 방송수신기 보급 확대를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 및 관련부처와의 업무협력 강화, 맞춤형 홍보, 신청 편의 제공 등 추진

○ 장애인방송의 질적 수준 제고, 방송접근 개선을 위한 신규서비스 도입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의 어려움 및 방송사 지원 요구

-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의 제작여건 등을 고려한 제작비 추가 재원 확보

○ 유료방송사업자 간 거래상황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리한 조건 강요 및 부당 영업활동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 홈쇼핑 사업자-납품업체 간 상품판매방송 편성과 관련하여 불공정 거래(영상 제작비 전가, 일방적 편성 취소 등) 관행 발생

- 실태점검, 조사 등을 통한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여부 확인과 위반 시 제도 개선, 시정명령 등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III-1-①)

□ 추진배경 (목적)

○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장시간 근로 및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권익보호 필요성이 국회 등에서 제기

-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 심화로 방송프로그램의 막말·선정·폭력 등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저하에 대한 시청자의 우려 증대

○ 방송 제작 과정의 출연자 권익 침해, 과도한 막말·선정·폭력 등이 시청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저해하고, 방송의 신뢰성을 낮추는 만큼,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출연아동 권익보호)**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 출연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언어사용·신체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20.4분기)

- 방통위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후, 방송사 자체 가이드라인에 핵심 내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수 여부 점검

○ **(우수 프로그램 시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통합·문화다양성·바른 언어 사용 등에 기여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하여,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제고에 대한 방송 제작인의 사기 진작 및 창작 의욕 고취

※ 우수 프로그램 공유·확산을 위해 방송대상 수상작에 대해 시상식 이후 무료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 **(방송의 품격 제고)** 방송심의 사례집 제작·배포, 방송사 심의 책임자 회의 개최, 사례 교육 등 방송사의 자체심의 역량 강화

- 방송사와 함께 청소년 언어순화 자막고지 실시, 방송사의 특집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방송언어 사용 환경 개선 캠페인 추진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송출연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	2월	
2/4분기	방송심의 사례집 제작·배포	4월	
	방송언어순화 자막고지 등 캠페인 실시(상반기)	5월	
3/4분기	방심위 언어순화 특집 프로그램 제작 지원	7월	
	방송관계자 대상 미디어 교육 실시	7~12월	
	제작가이드라인(안) 검토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9월	
	20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9월	
4/4분기	20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다시보기 서비스 실시	10월	
	방송언어순화 자막고지 등 캠페인 실시(하반기)	10월	
	방송출연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연중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시상(월별 6~7편)	매월	
	이좋프 바른 언어 특별상	상·하반기	
	방송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사업자)** 방송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합리적·자율적인 판단 하에, 품격 있고 창의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 **(아동·청소년출연자)** 합리적 근로시간 보장, 제작 현장에서의 인격권 보호 등을 통한 공정하고 건전한 근로환경 향유

- **(시청자)** 막말·선정·폭력 등이 완화된 고품질 방송프로그램 시청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 방송제작 당사자 및 규제 대상 기관
-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 유관 기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내용 심의 기관

□ 기대효과

○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 및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성숙하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 우수 프로그램 선정·시상, 방송사의 자율규제 역량 강화, 방송언어 사용 환경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 제고 및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1-일반재정②, ④)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방송통신 발전기금	323.62 (651.98)	346.87 (680.0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310)		323.62	346.87
②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보(3134)	방송통신 발전기금	3.10 (66.61)	3.10 (78.01)
▪ 방송분야 시상(301)		3.10	3.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방송프로그램의 품격향상도(점)	62.3	63.5	63.7	63.9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치와 전년도 실적치를 감안하여 '20년 목표점수를 63.9점으로 설정 * 3년간 실적 평균치 : 63.5 * '19년도 실적치 : 63.7	[(방송심의활동 효과 만족도 3개 항목 각 7점척도 평균 점수)/7]×100 * 3개 항목 : ① 프로그램품질저하 방지기여도 ② 규정위반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수준의 적절성 ③ 방송관련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만족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청자, 방송업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2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III-1-②)

□ 추진배경 (목적)

○ 시·청각장애인 등이 방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 접근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이념 구현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용도),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청각장애인의 TV 시청을 돕기 위한 맞춤형 장애인용 TV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

- 시청각장애인용TV 성능개선 및 전국 17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정보소외가 심한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TV 보급 확대

○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및 제공실적 평가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

○ 청각장애인의 TV시청 편의를 위해 수어영상의 크기,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운영지원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청각장애인용 TV 제조업체 입찰공고 및 선정	2~4월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대상 방송사 선정 및 제작비 지원	4월~	
2/4분기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제작 지원	5월~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 홍보 및 신청자 접수	5~6월	
3/4분기	'19년도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	7~8월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자 선정 및 보급	7~12월	
4/4분기	시청각장애인용 TV 및 장애인방송 만족도 조사	10~12월	
	시청각장애인용 TV 유료방송호환성 기술개발	12월	
연중	스마트수어방송 서비스 운영 지원	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시·청각 장애인)**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방송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방송에 대한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

○ **이해관계집단**

- **(방송사업자)**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방송(폐쇄자막·한국수어·화면해설) 의무편성 시행

- **(장애인 유관단체)** 시·청각장애인 입장을 대변하고, 국내 장애인 방송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 정책방향 마련에 기여

□ 기대효과

○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방송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회계구분	'19	'20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②)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방송통신 발전기금	116.18 (651.98)	109.11 (680.03)
▪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308)		116.18	109.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점)	78.1	81.6	85.6	86	최근 3년 평균치(81.7점)와 전년도 목표치(82점) 및실적치(85.6점)을 감안하여 실적치 대비 0.4점 상향 조정하여 '20년도 목표점수를 86점으로 설정간 실적의	(자막방송만족도×0.87)+(수어방송만족도×0.04)+(화면해설방송만족도×0.09)	장애인방송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3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III-1-③)

□ 추진배경 (목적)

□ (국정과제 70-4)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 (주요 내용) 방송시장(플랫폼-PP간, 홈쇼핑사-중소납품업체간)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및 개선을 통한 미디어상생환경 조성

○ SO의 점유율 하락과 IPTV 점유율 상승 등에 따라 유료방송 시장의 가입자 확보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입자 유치 등 과열 경쟁으로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가능성 증대

○ 방송시장에서의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 필요

- 플랫폼 사업자-콘텐츠 사업자 간, 홈쇼핑사업자-납품업자 간 불공정 행위 등을 시정하여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상품에 대한 거짓고지, 중요사항 미고지 등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법 영업행위 근절

○ 방송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라 방송사업자간의 분쟁* 발생 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공정경쟁 기반 조성

* 사업자 간 주요 분쟁 사례 : 재송신료, 채널계약, 프로그램 사용료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에 대해 점검·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등 제재 조치(연중)

○ 금지행위 위반 유료방송사에게 조치한 시정명령의 이행실태 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자의 자정노력 유도

○ 유료방송사업자의 기존 가입자 접수민원 분석을 통해 유형별 주요 이슈를 발굴·공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추진

※ 방통위, 유료방송사, 협회, 재단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운영

○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방송법·IPTV법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유료방송사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방송시장 조사업무의 실효성 확보

○ 유료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에 따른 가입자 유치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시장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

○ IPTV 방송의 전용회선 사용료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19.6.25.)에 따라 전용회선 재계약 시 IPTV 사업자의 다중화 전송방식 안내 여부 점검

○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19.1.1일 시행)에 따른 5개 데이터 홈쇼핑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

○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를 통해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부과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시청자의 정보 활용도 제고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IPTV 방송 전용회선 관련 전송방식 안내 여부 점검	3월	
	홈쇼핑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3월	
2/4분기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 마련	4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6월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인포그래픽 배포	6월	
3/4분기	유료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실태 점검	7월	
	홈쇼핑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이행점검	7~12월	
	방송광고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7월	
	유료방송사업자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실태 점검	7월	
	외주제작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9월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 국회 제출	9월	
	유료방송 감정노동 종사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9월	
4/4분기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인포그래픽 배포	12월	
연중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연중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연중	
	방송분야 불공정행위 전문가 자문반 운영	연중	
	유료방송사 접수민원 분석(4회)	분기별 1회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4회)	분기별 1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이용자)**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
- **(방송사업자 등)** 방송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근절, 분쟁조정 등 사업자간 상생 환경 조성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정부, 학계 및 산업계 등)**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자료를 통해 방송시장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방송정책 수립·연구 등에 활용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 등)** 방송법, IPTV법,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금지행위 규제대상
-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시장 동향 및 민원분석 등 방송시장 조사 관련 업무 지원

□ 기대효과

○ 불공정행위 시정, 제도개선, 분쟁조정 등을 통하여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

○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공표하여 방송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등 방송정책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방송시장의 규모 및 거래현황 정보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②)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방송통신 발전기금	21.69 (616.57)	23.67 (680.03)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지원(312)		6.74	6.7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개선건수(건)	신규	4	5	6	공정행위 개선분야와 향후 불공정행위 예상 분야를 검토하여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제재 조치 및 제도개선 등 총 6건을 목표치로 설정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건수(6건)	공문, 사실조사 보고서 등

성과목표 Ⅲ-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1) 주요 내용

○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행사 개최,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 대상(大賞) 시상 등과 함께,

- 해외 방송시장 및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 분석 등 방송콘텐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류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방송광고·협찬고지 제도개선을 통해 고품질 콘텐츠 제작재원을 확충함으로써 미디어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복리를 증진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 방송사-외주사간 거래절차 투명화 등을 통해 외주제작을 활성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

○ 수중계 및 1개국 영화·애니·대중음악 편성규제를 개선하여 지역민방과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경쟁력·다양성 강화

○ 혁신형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시청자에게 우수한 방송콘텐츠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기업, 우수 녹색 경영・녹색인증 중소기업, 글로벌 IP(지식재산)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등을 통칭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조사·산정하여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규제기준 및 정책 자료로 활용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방송산업 발전 기반 구축도(점)	-	신규	80	80.5	각 구성요소별 '20년 목표치의 산술평균값을 목표로 책정 ①외주제작정책만족도:82(점) ②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정책 만족도:76(점) ③중소기업방송광고제작지원 성과도:83.6(점) * 각 구성요소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만점 기준 환산	(①외주제작 정책만족도 + ②방송공동제작 협력강화 정책만족도 + ③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성과도) / 3	이해관계자·전문가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사업효과평가 조사결과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한류 방송콘텐츠가 기존 아시아 위주의 시장을 넘어, 미주·유럽, 중동·중남미 등 전세계 방송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기반 마련 등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 최근 매체이용 행태 변화로 총광고비에서 방송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방송사업자의 제작 여건이 악화

* 온라인 광고 : ('11년) 19.8% → ('18년) 43.2%
방 송 광 고 : ('11년) 38.6% → ('18년) 25.3%

○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거래 시 부족한 제작비 지급, 불합리한 권리 배분 등 불공정관행 이슈가 부각되면서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 증대

○ 지역민방 수중계 편성규제 기준이 편성고시상 과거 허가차수로 규정되어 있어 경영·방송수급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특정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PP에도 1개국 영화·애니·대중음악 상한 편성규제가 적용되어 등록취지에 맞지 않는 방송프로그램 일부 편성 중

○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의 부족으로 지속적 성장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 방송광고 시장은 기업의 인지도 제고에는 효과적이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활용 곤란

□ 갈등요인

○ 방송광고·협찬고지 제도개선은 방송사업자의 고품질 콘텐츠 제작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나, 타 매체 광고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관련 법령 개정 시 방송사,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 설득

○ 외주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관련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지속적인 의견수렴이 필요

-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 및「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점검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

○ 지역민방 수중계 개선 시 지역민방의 사측·노측간 입장이 상이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청취 필요

- 지역민방 관련자,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수중계 개선방안 마련

○ 벤처 등 인증*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므로 지원 대상이 일부로 제한되며, 중소기업이 방송광고 제작 후 광고 송출비에 대한 부담으로 방송광고 활용에 한계

* 산업부·중기청 내부 기준에 따라 관련 협회 등에서 중소기업으로 인증

-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방송광고 관련 교육을 통해 여러 미디어렙의 송출비 할인 제도 등을 소개하여 제작한 방송광고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

(4) 기타

□ 광고매체시장 환경 변화

○ 국내 총광고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나 모바일·인터넷으로의 광고시장 이동 등으로 방송광고시장이 침체되고 특히 지상파 광고시장 급감

< 2018년 국내 매체별 총광고비 >

구분	매체	광고비(억)		성장률(%)	구성비(%)
		'17	'18	'18	'18
방송 (dmb 제외)	지상파	14,121	13,007	△7.9	10.2
	유료방송	17,519	19,247	9.9	15.1
	방송계	31,640	32,254	1.9	25.3
인쇄		23,103	22,672	△1.9	17.8
온라인·모바일		47,751	55,133	15.5	43.2
기타 (옥외/교통 등)		17,180	17,454	1.6	13.7
총계		119,674	127,513	6.6	100.0

[출처 : (방송)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방송 이외)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 방송광고 규제 현황(방송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제59조의 2,3)

○ **(개요)** 7가지 광고 유형*으로 분류되고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가상·간접광고 규제 등이 비대칭적으로 규정

*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로 분류

○ **(광고총량제)**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규제를 적용하되 총량 내에서는 자유로운 광고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

※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중간광고 시간은 편성시간별 총량규제에 포함

○ **(중간광고)** 지상파는 원칙적으로 중간광고가 금지, 유료방송은 중간광고를 허용하되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횟수에 차이를 둠

유 형	정의	지상파	유료방송
광고 총량제	광고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광고 송출시간을 정하는 제도	편성시간당 평균 15/100, 최대 18/100	편성시간당 평균 17/100, 최대 20/100
방송프로그램 광고	방송프로그램의 전후에 편성되는 광고	TV의 경우 편성시간당 최대 15/100	-
토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	-
자막광고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화면 1/4 이내	화면 1/4 이내
시보광고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	-
중간광고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73년 오일쇼크 이후 과소비방지 목적으로 금지)	금지 (단,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은 허용)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허용횟수 다름, 매회 광고시간 1분 이내 프로그램 길이 / 허용횟수 45-60분 / 1회 이내 60-90분 / 2회 이내 90-120분 / 3회 이내 120-150분 / 4회 이내 150-180분 / 5회 이내 180분- / 6회 이내 ※ 중간광고 시작 전 자막·음성으로 고지
가상광고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오락·스포츠중계·스포츠보도 분야에 허용)	해당 프로그램시간의 5/100, 화면 1/4이내 ※ 프로그램 전에 가상광고 포함 여부를 자막 표기하되 크기는 화면 1/16 이상	해당 프로그램시간의 7/100, 화면 1/4이내 ※ 프로그램 전에 가상광고 포함여부를 자막 표기하되 크기는 화면 1/16 이상
간접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오락과 교양분야에 허용)	해당 프로그램시간의 5/100, 화면 1/4이내 ※ 프로그램 전에 간접광고 포함 여부를 자막 표기	해당 프로그램시간의 7/100, 화면 1/4이내 ※ 프로그램 전에 간접광고 포함여부를 자막 표기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사업효과

① 지원기업 성장

○ 방송광고 제작지원 중소기업 매출액 전년대비 20.9% 성장

- TV광고 제작지원 기업(43개사) 27.7%, 라디오광고 제작지원 기업(32개사) 8.1% 성장

〈 **2019년 지원대상 기업 매출액 성장률** 〉

구분	조사대상	매출액(백만원)		성장률(%)
		2018년	2019년	
TV 광고 제작지원	43	427,858	546,189	27.7
라디오 광고 제작지원	32	226,256	244,613	8.1
전체	75	654,114	790,802	20.9

※ 2017년 대비 2018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5.89%(국가통계포털)

○ 특히, 커피와 한방티 캡슐 머신을 판매하는 ㈜메디프레소는 700%의 매출 성장을 보였고, 매출액이 100% 이상 성장한 기업도 6곳으로 나타남

〈 **2019년 지원기업 중 매출액 성장률 상위 10개 기업** 〉

회사명	지원 분야	매출액(백만원)		성장률(%)
		2018년	2019년	
(주)메디프레소	TV	35	280	700.0
주식회사 에이럭스	TV	4,000	11,600	190.0
주식회사에스엠티엔티	TV	8,700	25,000	187.4
주식회사 원티드랩	TV	3,356	9,400	180.1
호두랩스	TV	1,300	3,500	169.2
(주)다우스	라디오	600	1,200	100.0
앤앤컴퍼니	TV	29,100	56,000	92.4
주식회사 에이치피솔루션	라디오	800	1,500	87.5
(주)두미나	TV	1,100	2,000	81.8
오아주식회사	TV	20,000	33,500	67.5

○ 방송광고 제작지원 중소기업 평균 직원 수 9.3명 증가(27.7%)

- 전체 지원기업(75개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8년 2,512명에서 '19년 3,209명으로 697명(사별 9.3명)이 증가(증가율 27.7%)

※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②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 지원기업(75개사)은 약 21억원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받고 자체 자금 42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광고 송출비로 약 162억원을 집행하여 본 사업으로 유발된 방송광고 시장 총 매출은 225억원으로 투입예산 대비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 방송광고 관련 시장 활성화 정도 〉

구분	지원 기업수	제작비(백만원)			송출비 (백만원)	합계 (백만원)
		지원금	자체자금	계		
TV제작지원	43	1,998	4,186	6,184	15,463	21,647
라디오 제작지원	32	99	56	155	699	854
합계	75	2,097	4,242	6,339	16,162	22,501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III-2-①)

□ 추진배경 (목적)

□ (**국정과제 70-4**)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 (대통령 지시사항)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저작권 등 관련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며, 외주사 내의 근로계약 등에도 표준계약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주요 내용) 방송사-외주사간 불공정 실태점검을 통한 제도개선과 지상파·유료방송에 대한 중간·가상·간접광고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불합리한 사후 규제체계 정비

□ (**일자리 주요정책 59**) 방송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주요 내용) 방송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콘퍼런스) 한국 방송콘텐츠의 창의성과 우수성 등을 소개, 미디어산업 변화·미래상 등 방송관련 글로벌 이슈 논의 등
- (네트워킹) 국내 방송사·제작사와 해외 방송사업자·제작사 간 1:1 비즈니스 네트워킹, 피칭(방송콘텐츠 기획안 홍보) 프로그램 구성

○ 한류 방송콘텐츠가 기존 아시아 위주의 시장을 넘어, 미주·유럽, 중동·중남미 등 전 세계 방송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기반 마련 등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매체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매체광고 시장 역전, 제작비 급증 등으로 방송사업자의 제작 여건 악화

- 고품질 콘텐츠 지속 제작 재원확충을 위해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외주제작물 의무편성 도입으로 외주제작물 편성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외주제작시장이 확대되었으나,

- 불충분한 외주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의 자의적 배분 등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불공정관행이 지속되어,

-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실시,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점검 등 방송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 지역민방 수중계 편성규제 기준이 과거 허가차수로 규정되어 있어 경영여건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최근 3년간 매출액 등으로 기준 개정

- 특정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PP에도 1개국 영화·애니·대중음악 편성규제가 적용되어 등록취지에 맞지 않는 3국의 방송프로그램을 일부 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예외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한류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와 방송협력 강화를 위해 FTA를 통해 근거가 마련된 국가(태국·터키·캐나다 등)와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 공동제작협정(안)의 법적 타당성 및 협정 혜택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상국 방송통신부처 간 국장급협의체 구성·운영

- 협정에 포함할 내용 및 협상전략 마련을 위해 국내 방송사·제작사·유관기관·법조계·학계 의견 수렴과 외교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 추진

○ 방송콘텐츠 국제마켓(MIPCOM* 등) 주빈국으로서 전세계 방송콘텐츠 전문가들에게 한국 방송콘텐츠의 창의성과 우수성, 제작역량 등을 집중 어필

* 주관사 리드미뎀(Reed Midem)이 매년 10월중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하는 세계최대 방송콘텐츠 영상마켓. 100여개국, 4,500여개 방송사, 13,000여명 이상 참여

- 영향력 있는 해외 제작자 및 바이어 대상 피칭세션(방송콘텐츠 기획안 홍보), 네트워킹, Biz 매칭 프로그램, 콘퍼런스 등 운영

※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프랑스 칸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MIPTV(3.30~4.2)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MIPCOM(10.12~15)으로 주빈국 행사를 연기하는 방안 협의 중

○ 방송콘텐츠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방송교류를 통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래 사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공유하기 위한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의 유용성과 발전방향 논의, 사업자 간 실효성 있는 네트워킹 기회 제공

○ 방송한류 진출 대상국의 방송시장·규제·공동제작 현황 및 이용행태·인식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국내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

< 방송광고·협찬고지 제도개선 >

○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및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을 위한 가상·간접광고 등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제도개선 추진

< 방송외주제작 환경 개선 및 편성규제 합리화 >

○ 표준계약서 사용률, 권리 배분 등 방송사-외주사간 외주 계약 실태 및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지상파4사·종편4사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상생협의체 운영 결과 등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점검

○ 편성규제 개선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갈등요인을 사전에 점검·대응하여 개정안 마련하여 편성고시 등 관련 법령 정비 추진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1/4분기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행사 기본계획안 마련, 관계부처·전문가 의견수렴 및 계약체결	2월	
	방송 공동제작 해외시장 분석 조사대상국 선정 및 조사	3월~	
2/4분기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행사 참가사 교육 등	4월	
	해외 우수 방송 공동제작 대상(大賞) 공모 및 선정	4~6월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기본계획안 마련	5월	
3/4분기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大賞) 시상	7월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행사 해외 주요인사 초청, 홍보자료 제작, 콘퍼런스 발제내용 구성 등	7~9월	
	방송 공동제작 해외시장 설문조사 실시	8~9월	
4/4분기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행사 개최	10월	
	방송 해외진출 및 공동제작협정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11월	
	방송 공동제작 해외시장 분석 보고서 결과보고 - 해외 미디어 이용행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12월	
연중	방송 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연중	
방송광고·협찬고지 제도개선			
2/4분기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5월	
4/4분기	방송광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위원회 의결	12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위원회 의결	12월	
방송외주제작 환경 개선 및 편성규제 합리화			
1/4분기	지상파방송3사·외주제작사 간 MOU 이행점검 실시	3월	
2/4분기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6월	
	편성규제 이해관계자·전문가 간담회 개최	6월	
3/4분기	외주제작시장 거래관행 관련 서면 설문조사 실시	9월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점검 실시	9월	
	편성규제 개선안 마련 및 위원회 보고	9월	
4/4분기	외주제작시장 거래관행 관련 심층 인터뷰 실시	11월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12월	
	편성규제 관련 법령 개정	11월	

* 터키·캐나다·태국·중국·러시아·메르코수르 등 국가별 협상 상시대응

* 코로나19 확산 지속시 '방송 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행사' 또는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행사'가 당초 보다 연기되거나 연내 개최가 불가능할 위험요소 상존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사 및 제작사)**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 및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행사·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

- **(방송사 및 광고주)**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통해 광고 효율성을 확보하여 광고효과를 확대할 수 있으며, 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에 기여

- **(지역민방)** 경영여건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변화가 적시에 수중계 비율에 반영되어 경쟁력 강화

- **(특정국가 문화 전문PP)** 등록취지에 맞지 않는 제3국의 영화·애니·대중음악 편성 의무가 제외되어 콘텐츠 경쟁력·다양성 제고

- **(외주제작사)** 외주제작 거래 관행의 실태조사,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점검 등을 통해 외주제작시장 활성화 촉진

○ 이해관계자

- **(시민단체)** 방송광고·협찬고지 제도개선에 따른 시청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청권 보호방안 마련 및 엄중한 사후규제 병행 추진 필요

□ 기대효과

○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 시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자국물 인정을 통한 수출 증대, 제작기술과 노하우 공유 및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방송관련 국제기구 및 정부간 협력 강화 토대 마련, 방송콘텐츠 교류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프로그램 발굴(시상) 등 국제 방송공동제작 인식 제고와 한류 확산 실행력 강화

○ 해외 방송시장·규제현황·구매력 등 체감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공동제작협정 협상 대응 및 방송사 등의 해외진출 지원

○ 방송광고·협찬고지 제도개선을 통해 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충하고,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 복지를 증진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외주제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외주제작시장의 활성화로 시청자에게 다양한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콘텐츠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

○ 수중계 규제기준을 경영여건 및 방송프로그램 수급여건 변화를 반영토록 개선하여 지역민방 경쟁력 강화

○ 특정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PP의 3국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경쟁력·다양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1-일반재정②,⑤)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방송통신 발전기금	2.5 (616.57)	3 (680.03)
▪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313)		2.5	3
② 방송통신운영지원(3135)	방송통신 발전기금	13.30 (33.30)	14.95 (72.93)
▪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302)		13.30	14.95
- 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		5.35	5.35
- 방송콘텐츠 국제 마켓 주빈국 개최		-	9.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콘텐츠 제작 활성화 기반 조성률	-	-	78.95	79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갈등 조정·협조가 필수적임 점 등을 고려하여 '19년 실적(78.95점)보다 상향된 79점을 목표치로 설정	(외주제작 정책 만족도× 0.5) + (방송공동제작 협력 강화정책 만족도× 0.5) * 만족도는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이해관계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외주 2회, 공동제작 1회)

2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III-2-②)

□ 추진배경 (목적)

□ **(일자리 주요정책 59)** 방송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주요 내용)**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유도

-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 방송광고 제작지원 대상 기업 선정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선정
- **(광고교육 및 컨설팅)** 우수 중소기업이 방송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고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일자리 영향 평가)** 사업 종료 후 지원 수혜 기업의 채용 계획 조사, 본 사업이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미친 영향을 측정

○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송광고가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이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활용하지 못하고, 대기업은 방송광고 외에 모바일·인터넷 광고를 확대함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중 제작 지원을 신청한 기업을 심사하여 TV 36개사, 라디오 34개사 등 총 70개사에 대해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컨설팅 제공

- 방송광고 업무에 대한 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방송광고 교육 및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 제공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연간 기본계획 수립	1월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2월	
	지원기업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제공	3월~	
2/4분기	추가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6월	
	추가 지원기업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제공	6월~	
4/4분기	효과평가 계획 수립	11월	
	효과평가 실시	12월~	'21.2월 완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및 제품의 인지도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기대

- **(광고대행사 및 제작사)**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에 따라 광고 제작에 참여하는 대행사 및 제작사의 시장 확대 예상

- **(방송사)** 기존 광고주 이외에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광고주로 유입되어 광고매출 증가를 통한 재원확보로 양질의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 **이해관계자**

- **(미인증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여 벤처 등 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대효과

○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마케팅 능력 강화로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

- 혁신형 중소기업이 새로운 광고주로서 방송광고시장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1-일반재정④)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3134)	방송통신 발전기금	3.10 (66.61)	3.10 (78.01)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315)		23.50	18.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성과도(점)	-	신규	4.17	4.18	최근 5년간('15~'19년) 실적치 평균(4.14)에 1% 상향가중치를 적용한 4.18을 목표치로 설정	(기업성장 기여도x0.5)+(사업 만족도x0.5)	사업효과평가 조사결과

3 시청점유율 조사 타당성 제고(III-2-③)

□ 추진배경 (목적)

○ 방송법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에 따라 매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조사·산정·공표하고,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시 심사에 반영

※ 특정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 제재조치 가능

○ 국민들의 방송프로그램 시청경로가 실시간TV 외에도 스마트폰, PC, VOD(비실시간)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 현행 실시간TV 시청점유율에 스마트폰·PC·VOD(비실시간) 시청시간을 포함한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우리나라 전체 가구 및 개인의 시청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20,000가구를 대상으로 TV보유・수신환경, 방송콘텐츠 이용현황 등 방문면접조사 실시(매년 6월~10월)

○ **(시청점유율 조사)** ’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000가구의 고정형 TV를 대상으로 실시간 방송채널 시청시간 측정

○ **(시청점유율 산정)** 방송사업자 소유구조 현황 분석(특수관계자, 주식·지분관계, 일간신문 구독률 환산) 등을 통해 시청점유율 산정

○ **(스마트폰·PC 시청행태 조사)** 전국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69세 이하 5,000여명(스마트폰 3,500명 이상, PC 1,500명 이상) 패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PC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시청행태 조사

○ **(VOD 시청행태 조사)** 고정형TV VOD(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한 3,000가구, 만 4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TV VOD(비실시간) 시청행태 조사

○ **(조사 점검 체계 구축)** 패널 관리(패널 추가 영입, 패널 교체 등), 월간 점검회의(측정 기술, 시청기록 점검 등)를 통해 시청기록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0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개시	1월	전년도 사업 이월(~3월)
	2020년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개시	1월	
	2020년도 시청점유율, N스크린 조사 용역 사전 공고	2월	
	2019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자료 접수	3월	
2/4분기	2020년도 시청점유율, N스크린 조사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4월	
	2019년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결과 발표	4월	
	2020년도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실시	6월	
	2019년도 매체교환율 및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도출	6월	
	2020년도 TV·신문 이용행태 조사(1차)	6월	
3/4분기	2019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통합시청점유율 시범산정 결과 포함)	7월	
4/4분기	2020년도 TV·신문 이용행태 조사(2차)	10월	
	2020년도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종료 및 결과 분석	11월	
	2020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종료	12월	
	2020년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종료	12월	
	2020년도 고정형TV VOD 시청행태 조사 종료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시청자)** 시청점유율 규제를 통해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증진하여 방송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확대

- **(방송사업자)** 다양한 시청경로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시청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편성에 참고자료로 활용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라 방송사업 소유제한, 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일부양도 등의 제제를 받을 수 있음

□ 기대효과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규제를 통해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보장하여 미디어 영향력 독과점 방지 및 미디어 다양성 구현

- 스마트폰·PC와 VOD 시청행태 조사를 실시하여 매체이용 행태 변화를 시청점유율에 반영함으로써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시청점유율 규제의 타당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2-일반재정②)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방송통신 발전기금	49.16 (616.57)	49.16 (680.03)
▪ 미디어다양성 증진(301)		49.16	49.1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시청점유율 조사 신뢰성 개선도(%)	85	87.7	89.3	90	(패널 대표성 향상률×0.6) + (개선사항 이행률×0.4) = **90** **- 패널 대표성 향상률** · 시청점유율 패널 대표성 향상을 위해 장래가구추계 대비 저연령(20~30대)층 1인 가구 패널 영입률을 측정 · 최근 3년간 패널영입률 추이* 및 패널모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3개년 평균 실적치(83.8%) 대비 3.2% 상향한 87%를 '20년도 패널 대표성 향상률 목표치로 설정 * '17년 80.5%, '18년 82.5%, '19년 88.4% 달성 **- 시청점유율·시청행태조사 개선사항 이행률** · 시청점유율 검증연구반 또는 전문가 연구반의 개선 및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률*을 측정 * '19년도 개선 및 시정권고사항 이행률 (11건/15건=73.3%) · 전년도 개선사항 이행률 실적치 등을 고려하여 '20년도 개선사항 이행률 목표치를 75%로 설정	<측정방법> (패널 대표성 향상률×0.6) + (개선사항 이행률×0.4) <측정산식> [(패널실적치/패널목표치)×100]×0.6 + [(개선사항이행건수/개선사항도출건수)×100]×0.4	전문 조사기관 및 시청점유율조사 검증연구반/ 전문가연구반

▷ 패널 대표성 향상률 : 저연령층(20～30대) 1인 가구 패널 모집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시청점유율 조사 패널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저연령층(20~30대) 1인 가구 패널영입률을 성과지표로 설정

▷ 시청점유율·시청행태 조사 개선사항 이행률 : 시청점유율 검증연구반 및 전문가 연구반을 통해 측정기술 및 측정방식, 패널의 운영관리 등 월평균 1건 정도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당해연도 개선이행 정도를 측정

전략목표 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 한다.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하고 방통위 정책추진을 지원

○ 2020년 정부업무평가 주요내용인 국정과제, 정부혁신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과 행정관리역량 강화 등 각종 시책 추진

○ 방송통신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과의 소통 확대 및 대언론 취재지원 강화를 통한 정책 이해도·기관 신뢰도 제고

◇ 그간의 성과

○ **(행정관리)** 기관장 중심의 다양한 행사 개최, 국민 참여와 민관 협업을 통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적극적 성과관리 추진

※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등급(행안부 장관 표창)

○ **(정보보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통한 침해사고 대응능력 강화 및 정보시스템 보호

○ **(정책소통)**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방송통신 정책과 국정과제에 대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아울러 알기 쉽게 전달·확산

○ **(국제협력)** 방송통신 정부기관과의 고위급 면담 및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내 방송·통신 규제 정책 소개 및 국제적 현안 공유 등 정책 교류를 통한 방송통신 협력 기반 마련

○ **(규제개혁)**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 등 ‘19년도 4건의 규제개선 추진을 통해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

◇ 중점 추진내용

○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 및 주요업무계획의 원활한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국정과제 시스템 등을 통한 정기적인 점검·평가 등 추진

○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개최,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으로 국민 소통과 협업의 가치를 실무행정에 구현

○ 사회적 재난 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비상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충무계획 작성 및 보안점검 내실화

○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규제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공직의 신뢰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직가치 및 방송통신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유연근무 등 자기 주도적 근무행태를 활성화

○ 방송통신 주요정책 내용을 쉽고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확산함으로써 대국민 소통 강화 및 기관 신뢰도 제고

○ 방송통신 분야 정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교류 추진과 통상 협상 능력 강화를 통한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강화

◇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방송통신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재개발, 정보보안, 규제개선, 직장문화, 법제관련 사항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에 기여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4	7	14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 성과를 극대화한다.		① 기관혁신 및 소통 만족도
Ⅳ-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중점추진과제 이행률 ② 규제심사위원회 등 규제 관련 활동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①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률 ② 혁신과제 이행률
	②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② 비상대비 및 보안점검 달성률 ③ 사회재난 대응 실적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① 기존 규제정비 과제 이행률
	④ 국정가치를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	①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 ② 유연근무실시율 제고 ③ 관용차량의 친환경차량 보유율
Ⅳ-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국제 컨퍼런스·회의 등 국제행사 활동 건수 ② 보도자료 온라인콘텐츠 제작율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① 정책홍보 활성화율 ②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만족도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① 국민참여 콘텐츠 실적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① 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 ② 남북방송통신 교류 정책 만족도

전략목표 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 주요내용

□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실현을 위해 기관 내·외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국민편익증진 및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

○ 직원의 전문성과 공직가치 확립 및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소통 활동을 전개하여 대국민·대언론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신뢰도 증대

○ 방송통신 관련 외국정부,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교류·협력 추진 및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24			
기관혁신 및 소통 만족도	-	-	-	-	67.4	70	기관혁신 및 소통 만족도는 주요정책 성과 만족도 조사시 병행하여 조사 ※ ‘19년 실적(67.4점)을 참고 목표로 설정하여 매년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함	7점 척도 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정책성과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일반국민들이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국민의 실생활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공감대 제고 필요

○ 신종 감염병 출현 등 사회·자연재해, 국제 정세 변화 등 불확실성 증가

○ 방통위는 국정과제 2개(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및 일자리 주요정책 1개를 추진 중에 있으며,

- 방통위 주요 정책이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긴밀한 협조가 필요

○ 지능정보사회에서 미디어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방송통신 정책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 필요성이 증대

□ 갈등요인

○ 방송통신 분야 특성상 이해당사자가 불특정 다수인 전 국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견 통일이 어렵고,

- 이해당사자가 특정인으로 한정되더라도 추구하는 이익의 크기가 정해져 있거나 의견 차이가 커 이해당사자간 조정이 쉽지 않음

○ 방송통신 산업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관 기술변화와 시장 상황을 적기에 관리하지 못할 경우 행정규제가 민간의 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방송통신 서비스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정부간 규제협력 및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

○ 규제중심 업무로 일반국민의 주목도가 높지 않고, 정책 내용이 어려워 홍보콘텐츠 기획·확산이 어려운 한계

○ 신종 감염병 출현 등 사회·자연재해의 경우 피해 범위 및 대상의 예측이 어려우며 복구에 개개인의 자율적 참여가 필요

□ 갈등관리계획

○ 이해당사자가 한정된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소통을 통해 주요 이해당사자별 입장을 파악하고 갈등 발생의 사전 차단에 노력

○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 활성화를 통해 법령정비 및 규제개혁의 추진동력 확보

○ 정부 간 협력, 국제기구 활동 참여 및 방송통신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방송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방송사간 MoU 체결 등 교류·협력 지원

○ 기관장, 부서장 등이 의지를 가지고 구성원들로부터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기 주도적 근무형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

○ 다양한 상황에서 공직자로서의 정책판단 기준이 되는 국정철학 등 공직가치 분야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개인별 목표수립 및 이수 여부 지원·관리

○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을 온라인 홍보콘텐츠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 신종 전염병 출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비 전담반 구성·운영으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훈련 실시로 전시 대비 비상대비 태세 구축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 Ⅳ-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1) 주요 내용

□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효율성 증대

○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 2개*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평가 등 추진

*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정부 내 시스템을 통해 국무조정실·부처관계자들 간 의견교환 및 실시간 점검·관리·평가 등 국정과제 적극 추진

○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관내·외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정책고객 대표자회의 개최 등을 통한 국민 참여 확대,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한 업무 간소화 및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 추진

□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 신종 전염병 출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비 전담반 구축·운영 및 정확한 정보 전파로 사회적 불안감 최소화

○ 비상대비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훈련 실시로 전시 대비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국가 위기관리 체계 확립

□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 규제정부입증책임제의 일괄 정비 추진 대상을 확대(행정규칙→법률·시행규칙)하고, 국민·기업의 참여 보장을 위한 절차 제도화 추진

○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 국정가치를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

○ 공직자의 기본 소양 함양, 직무 전문성 제고,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의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이수를 독려하여 올바른 국정가치 및 공직가치 확립을 도모

○ 일·생활 균형을 권리로 인식하고 일과 휴식이 양립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공무원 근무혁신 기조 실천

○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에 동참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중점추진과제 이행률(%)	-	-	신규	100%	2020년 중점추진과제 이행 실적 측정	(이행과제 건수/ 세부과제 건수) × 100	중점추진과제 점검보고서
규제심사위원회 등 규제 관련 활동(건)	-	신규	9회	7회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신설 규제 뿐만 아니라, 기존 행정규칙 및 건의과제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적극적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동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	규제심사위원회 등 규제 관련 위원회·회의·행사 개최 실적	내부자료, 규제정보시스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 및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등 2개의 국정과제를 추진 중이나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음

- 또한, 방통위 주요 정책이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긴밀한 협력 필요

○ 신종 전염병 출현 등 사회적 재난 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사회적 파장이 큼에 따라, 조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대비 대응체계 마련 필요

□ 갈등요인

○ 기관내외 소통 활성화 추진 결과, 국민 편익증진과 내부 업무개선이 이루어져 성과가 나고 있지만 구성원의 업무부담도 증가하는 상황임

○ 사회적 재난 발생이 돌발적이며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피해범위 및 대상 확정의 어려움과 안보 인식 저하로 비상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조

□ 갈등관리계획

○ 업무 DB를 활용하여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구성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에 노력

○ 외부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충무계획 및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원회와 산하·유관기관의 관심도 제고

○ 장시간 근무 관행, 상사·동료 눈치 보기 등으로 자유로운 연가 사용이나 정시퇴근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일 할 때 제대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쉴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

○ 공직관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하는 기본적 항목이나 직무분야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국정과제, 공직가치 등 교육은 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 조직의 체계적 관리·독려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 신종 전염병 출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비 전담반 구성·운영으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훈련 실시로 전시 대비 비상대비 태세를 구축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Ⅳ-1-①)

□ 추진배경

○ 정부출범 3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및 주요업무계획 등 주요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혁신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데 핵심역량 집중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 2개*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매월 이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및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평가 등 추진

*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국정과제 선정 3년차에 급변하는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한 국정과제의 적정성·타당성 보완 실시

○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5기 방통위 출범 및 변화된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5기 정책과제 수립 추진

* 4기 정책과제에 대해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5기 정책과제에 반영

○ 정부혁신을 통해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낡은 업무관행 제거

- 정책현장 대화, 정책평가 등에의 국민의견 반영 확대 등을 통해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 디지털 기술의 활용, 불필요한 행정낭비 줄이기,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을 통해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0년 업무계획 수립	1월	
	2020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3월	
2/4분기	2020년 상반기 정책현장 대화 개최	5월	
	2020년 상반기 창의역량 교육 실시	6월	
3/4분기	2020년 정부혁신 콘서트 개최	9월	
4/4분기	2020년 하반기 정책현장 대화 개최	11월	
	2020년 하반기 창의역량 교육 실시	11월	
	제5기 정책과제 수립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방송통신 사업자 및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노령층, 시청각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 계층

- 방송통신 업계 각 분야별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과정에의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편익 제고

○ **(이해관계자)** 방송통신사업자 및 시민단체, 지자체 등

- 이해당사자가 불특정 다수인 전 국민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고 당사자별 추구하는 이익의 크기도 커서 의견 조정이 어려워 의견대립이 존재

□ 기대효과

○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해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을 정착시키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율(%)	100	100	100	100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의 연도별 세부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 4월부터 매월 이행상황 점검	국정과제 대상 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 국정과제 시스템 운영 및 개선실적을 정성평가	내부자료, 국정과제 시스템 관리 실적
혁신과제 이행률(%)	-	-	100	100	방통위 정부혁신 실행계획상 혁신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측정 - 정부혁신과제는 방통위 조직 혁신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주요과제임을 감안하여 이행 목표를 100%로 설정	(이행과제 건수/과제 건수)× 100	정부혁신평가 결과보고서

2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Ⅳ-1-②)

□ 추진배경

○ 신종 전염병 출현 등 사회적 재난에 따른 국민 불안감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대응체제 필요

○ 국가 안보 및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 시설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 비상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충무계획 수립과 중점관리대상 업체에 대한 비상 시 동원가능 자원조사 및 국가 위기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 수행

*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35조, 통합방위법 제21조,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8조·제10조·제1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 제6조, 보안업무규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신종 전염병 출현 및 사회적 재단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비 전담반 구성·운영

○ 방송시설에 대한 내실 있는 보안감사를 통해 보안 취약요인을 사전 발굴 및 차단하여 보안사고를 예방

○ 주요 방송사업자와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역량 향상 및 직원 안전의식 제고

○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충무계획 작성·시행 및 실시계획 승인

○ 비상대비분야 확인평가 및 중점관리 대상 업체(동원지정업체) 자원조사 실시로 비상대비 관련 문제점 개선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코로나 대응 TF팀 구성	1월	
	동원자원조사 실시	2~3월	
	코로나 비상 대응기구 편성	3월	
	2020년도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3월	
2/4분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지침 작성	5월	
	충무집행계획 수립 및 검토·승인	5~11월	
	2020년도 상반기 보안감사 실시	5~6월	
3/4분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이행 점검	9~10월	
	2020년도 을지태극훈련 실시	9~11월	
	2020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9월	
4/4분기	비상대비 확인 점검	10~11월	
	2020년도 하반기 보안감사 실시	11~12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추진실적 및 익년도 계획 보고	11~12월	
수 시	코로나 등 사회적 재난 대응기구 운영	상황종료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신종 전염병 출현 및 사회적 재난발생에 따른 국가 혼란 최소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이해관계자

- **(사회적 재난대비)** 정부·공공기관(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방송사업자(재난주관방송사 및 전국 방송사업자 등)

- **(비상대비)** 주요 방송사를 포함한 동원지정업체 및 비밀특례기관

□ 기대효과

○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여 비상대비 전담반을 구성·운영함으로써 비상 시 체계적 대응 및 신속·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사회적 불안감 최소화

○ 현실성 있는 위기상황을 고려한 충무계획 수립, 을지태극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으로 위기 대응능력 향상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한 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안인식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방송통신 운영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① 방송통신 운영지원(7131) ▪ 행정사무 정보화(308)	일반회계	14.30 (45.60) 14.30	12.68 (41.71) 12.68
② 방송통신 운영지원(7131) ▪ 방송재난관리(307)	일반회계	13.96 (45.60) 13.96	8.26 (41.71) 8.2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76.7	78.7	79.6	80.7	'18년 실적대비 1.1% 향상된 목표 설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본인확인기관 : 6개 - 위치정보사업자 : 3개	AL(%)=(T/5)x100 ※ AL : 수준율 T : 전체 기관의 수준평가 점수 평균(5점 만점)	기관별 결과보고서 등
사회적 재난 대응 실적	-	-	신규	100	사회적재난(코로나19)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중대본 인력파견 지원 등 대응반 운영 및 재난방송 실시, 대국민 홍보활동을 범정부 비상대응체계에 맞게 각 분야별 실적을 산정하여 합산	{[(코로나19 대응반 운영기간(월)/사회적재난기간(월))×0.5]+[(재난방송실시건수/재난방송요청건수)×0.3}+[대국민 코로나 홍보활동 월간 2건×0.2]}×100	내부자료, 보도자료 등 실적자료
비상대비 및 보안점검 달성률(%)	100	100	100	100	목표대비 실적지표로 매년 100% 달성 필요 <'20년도 목표> -자원조사 대상업체수 :46개 -보안점검 목표 : 14개	{[(자원조사실시업체/자원조사대상업체)×0.5]+[(보안점검 기관수/보안점검 목표 기관수)×0.5]}×100	점검 결과보고서

3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Ⅳ-1-③)

□ 추진배경

○ 침체된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 과감한 혁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규제정부입증책임제의 일괄 정비 추진 대상을 확대(행정규칙→법률·시행규칙)하고, 국민·기업의 참여 보장을 위한 절차 제도화 추진

○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개최(상반기)	3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상반기)	3월	
2/4분기	2020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6월	
3/4분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하반기)	7월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개최(하반기)	9월	
4/4분기	규제혁신 아이디어 국민공모 실시	11월	
	규제정부입증책임제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12월	
	규제혁신 실적보고서 제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통신사업자 및 서비스 이용자)** 방송통신 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함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사업자, 관계부처)** 규제혁신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송통신사업자 및 관계 부처 간 의견 대립 존재

□ 기대효과

○ 기업과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완화·폐지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기존규제정비 과제 이행률(%)	100	100	100	98	개선계획 대비 실적 측정 - 양적 과제 발굴 방식을 지양하고 성과·질적 지표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 선정 -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 추진을 위해 ‘19년도 이행 목표치 95%보다 3%p 상승한 98%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이행률(%) = (기존규제정비 이행과제수 / 기존규제정비 과제수) × 100 * 이행여부 판단기준: - 법률 제·개정 사항은 국회 제출까지를 이행으로 판단하고 시행령이하 법령의 경우 실제 제·개정 여부로 판단 - 법령 제·개정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개선 관리카드 상 기재된 개선내용을 보고 이행여부 판단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내부자료

④ 국정가치를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Ⅳ-1-④)

□ 추진배경(목적)

○ 위원회 성과목표와 국정목표의 정합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정목표의 지향에 적극 부합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확보 필요

○ 각 부문별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공직자 개인의 올바른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전문역량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국정가치 실천 문화를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공직자의 기본 소양 함양, 직무 전문성 제고,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의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이수를 독려하여 올바른 국정가치 및 공직가치 확립을 도모

- 사회적 가치 등의 국정과제 교육과 민생체험·봉사활동 등을 추진하여 공직가치를 적극 실천하는 공직자 상 구현

- 방송통신 관련 직무 교육과 기관주도 및 개인별 외국어 교육을 추진·지원함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전문성 제고

- 신규·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역량과 방송통신 업무에 필요한 기초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실시

○ 일·생활 균형을 권리로 인식하고 일과 휴식이 양립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공무원 근무혁신 기조 실천

- 근무시간 자율설계, 집단 유연근무제 등 개인 맞춤형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하여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기관·부서 등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

-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인별 연간 연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

- '가족 사랑의 날'을 주2회(수·금)실시하여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 시간을 갖는 등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

○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에 동참

- 위원회가 보유중인 전용 및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신규 구매(임차) 시에도 친환경차량으로 추진

- 소속 직원 및 산하기관들이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 2부제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을 적극 실천토록 독려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에 따른 '기준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기 위해 상시 노력

* 온실가스 발생량을 낮추기 위해 매년 일정수준의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는 것(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년도 복무관리 종합계획 결과 보고	1월	
	자체 외국어 위탁교육	2월	
	공무원 복무제도 교육	3월	
2/4분기	아동학대 예방교육	2분기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분기 중	
	장애인식개선교육	2분기 중	
	독서통신 교육	4~5월	
	20년도 근무혁신방안 종합계획 수립	4~5월	
	친환경차량 구매 추진	2분기 중	
4/4분기	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4분기 중	
	복무제도 만족도 조사	12월	
	친환경차량 구매 추진	4분기 중	
매 월	부서장 연가이용실적 점검	연중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시 보고
매 월	유연근무 실적 집계 및 분석	연중	위원장 주재 간부회의시 보고
수 시	복무점검 등 근무기강 확립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조직)** 국정가치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계획·추진함으로써 조직 생산성과 직원역량을 제고하여 조직효율 향상

- **(직원)** 국정가치, 전문역량 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배양하고, 공무원 근무혁신 실천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자기개발과 사기앙양 실현

- **(국민)** 위원회 성과목표가 국정목표와 정합성·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와 정책 만족도를 향상,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국민안전을 도모

○ 이해관계자

- **(교육기관)** 국정가치 및 직무분야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적합한 교육 기관과 능력 있는 강사 필요

- **(부서장·동료)** 일과 휴식이 양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휴가 시 업무공백이 없도록 시스템적 관리 필요

- **(관용차량 수요자)** 현재 친환경차량의 종류 및 공급량 등이 제한적이므로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음

□ 기대효과

○ 공직자의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도모하고 일관성 있는 국정목표·과제 실행력을 제고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

○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정부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에 일조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시간)	14.5	15.6	17.7	18	전년도 1인당 평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17.7시간) 대비 1.7% 증가 추진을 통해, 평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18시간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적극 설정	총 교육 이수시간 합계 / 4급 이하 현원(과장급 포함)	국정과제 교육 이수 실적
유연근무실시율 제고(%)	-	신규	76	80	'19년 위원회 유연근무 실시비율(76%)을 고려하여 8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	위원회 직원 유연근무 실시비율(%) (12일 이상 유연근무를 사용한 인원/위원회 현원)	표준인사시스템 통계 자료
관용차량의 친환경차량 보유율 (%)	-	-	신규	70	'19년 말 기준, 위원회가 보유한 친환경차량 비율(9대中 4대, 44%) 대비, 20년 신규 임차예정 차량 3대와 교체 임차예정 차량 3대를 고려하여 적극적 목표치 설정	위원회가 보유한 관용차량 중 친환경 차량의 비율 (친환경차량(대) /총 관용차량(대))	

성과목표 Ⅳ-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대국민·대언론 정책 소통 강화

○ 방통위 추진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소통활동을 전개하여 대국민·대언론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신뢰도 증대

- 주요 정책 내용을 쉽고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확산하여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을 통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추진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 정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급변하는 방송통신 통상 환경에 대응

- 지역별 주요 국가와의 고위급 면담 및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활동 지원

□ 남북 방송통신 교류 추진

○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7	'18	'19	'20			
국제 컨퍼런스·회의 등 국제행사 활동 건수(건)	-	신규	3	2	'19년 신규 지표로 코로나 19 사태로 국가 간 인적 이동이 제한되어 국제교류가 위축되는 등 업무추진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보수적으로 설정	국제 컨퍼런스 및 회의 등 국제행사 참여 실적	내부자료, 보도자료 등 실적자료
보도자료 온라인콘텐츠 제작률(%)	-	-	신규	80	주요 방송통신 정책을 발표하는 보도자료 내용을 쉽고 원활히 확산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로 구성해 제작 하는 비율로, 신규 도입한 지표인 점 등을 고려하여 80%의 목표치 설정	온라인콘텐츠 게재건수/ 보도자료 배포건수	방통위 콘텐츠 게재실적 및 보도자료 배포실적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지능정보사회에서 미디어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방송통신 정책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 필요성이 증대

○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 간 인적 이동이 제한되고,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국제행사·회의 등이 취소·연기되는 등 국제교류 활동 위축

○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지속 등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큼

□ 갈등요인

○ 규제중심 업무로 일반국민의 주목도가 높지 않고, 정책 내용이 어려워 홍보콘텐츠 기획·확산이 어려운 한계

○ 국가간 방송통신 정책이 상이하고 국제적 현안 대응을 위하여 국가간 협의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많음

○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 등 대내·외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음

□ 갈등관리계획

○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을 온라인 홍보콘텐츠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 고위급 양자 면담, 국제기구회의 참여 등을 통해 방송통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통해 정부간 정책 협력 강화

○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1 대국민 · 대언론 정책 소통 강화 (Ⅳ-2-①)

□ 추진배경

○ 방통위의 정책목표·추진과제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이 정책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소통 기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대국민·대언론 소통 활성화)** 보도자료 배포, 정책브리핑 등 신속·정확한 보도를 위한 언론 취재지원 및 국민소통 강화

○ **(오보 대응 체계화)** 허위·왜곡보도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방향을 정해 반박자료 배포·언론사 설명·언론중재 등 적극 조치

○ **(기관장 홍보활동 강화)** 현장소통, 정책관계자 간담회, 방송출연, 기고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한 현장·비대면 소통 강화

○ **(직원 소통역량 강화)** 보도자료 작성 요령, 효과적인 정책홍보 방안 등 직원 대상 홍보교육 및 바른 공공언어 사용 안내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통위 업무계획 홍보	1월	
	2020년도 홍보계획 수립	2월	
	부서별 홍보실적 평가	2월	
2/4분기	기관장 언론홍보 추진	6월	
3/4분기	영문 보도자료 배포	9월	
4/4분기	우수 보도자료 시상	12월	
	직원 소통교육 실시	12월	
연중	보도 배포 및 브리핑 지원	수시	
	출입기자 간담회 실시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모니터링		
	주간 홍보계획 관리		
	주요정책 기획홍보		
	반박·설명자료 배포 등 오보 대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언론사)** 방통위 정책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유용한 방송통신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 관련 보도·설명 자료 배포 등으로 언론사의 취재활동 지원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사업자·시민단체 등)** 방통위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자, 시민단체의 경우 방송통신 정책 발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원활한 소통이 필요

□ 기대효과

○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전략 마련 및 적극 소통을 통해 전 국민이 방송통신 정책을 유용하게 활용토록 함으로써 정책 효과성 제고

○ 이슈사안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언론사 설명 등 즉각 대응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관 신뢰도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정책홍보 활성화율(%)	-	-	신규	90	원활한 정책소통을 위한 보도자료 배포 활성화 및 철저한 오보 대응을 목표하되, 신규 지표인 점 등을 고려해 90%를 목표치로 설정	(보도자료 배포건수/200건) *60%+ (오보대응건수 /오보모니터링 건수)*40%	방통위 홈페이지 (알림마당-보도자료 코너) 및 정책여론 수렴시스템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만족도(점)	69	72.9	74.2	76	전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74.2점) 및 상승률(1.8%)을 고려하여 목표점 설정 -점수가 상향될수록 상승률이 둔화되나 적극적 업무 추진을 위해 전년보다 높은 상승률(2.4%) 설정	만족도 조사 결과 (대국민만족도 50%+대언론 만족도 50%)	방통위 온라인 방문자·출입기자단 대상 설문조사

2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강화 (Ⅳ-2-②)

□ 추진배경

○ 방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및 위원회 이미지 재고 등을 위해 온라인 SNS 채널을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생활밀착형 정책 홍보 강화)**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와 정책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확산

○ **(위기대응)** 코로나 19 및 n번방 등 범정부·방통위 정책 관련 위기 상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작·확산

○ **(국민의견 반영)**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책·방송통신 관련 정보를 국민 참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홍보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통위 업무 계획 홍보	1월	
	2020년도 홍보 계획 수립	1월	
	SNS 콘텐츠 제작 및 채널 관리 등 지원 대행사 선정	1월	
2/4분기	주요 정책 대국민 캠페인 추진	5~6월	
3/4분기	정책기자단 대상 정책설명회	9월	
4/4분기	부처 업무 협업 캠페인 진행	10월	
연중	주요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	수시	
	기관공식 사회관계방(SNS) 채널 운영·활성화		
	온라인 활성화 이벤트 실시		
	국민참여 방송통신 정책 콘텐츠 제작		
	위기대응 콘텐츠 등 제작·확산		
	주간 주요 콘텐츠 제작 계획 등 관리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국민)** 방송통신 관련 정보·정책 등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정책 홍보 및 생활 밀착형 방송통신 정보 제공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사업자·시민단체)** 방송통신 분야 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은 방통위 정책에 관심이 커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정보전달 필요

□ 기대효과

○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카드뉴스 등의 콘텐츠로 제작하여 정책 이해도 증진 및 대국민 소통강화

○ 국민이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7	'18	'19	'20			
국민참여 콘텐츠 실적	-	-	-	120건	일반국민이 방송통신 정책을 취재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국민 시각에서 정책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표, 한달에 10건을 목표	방통위SNS에 게재된 국민참여 콘텐츠 게재건수	방통위 SNS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Ⅳ-2-③)

□ 추진배경(목적)

○ 방송통신 규제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적 현안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교류 협력 활동 지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남북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 **(국가간 협력 기반 강화)** 정책 수요에 기반한 해외 주요 방송통신 규제기관과의 고위급 면담을 통한 주요 정책 현황 공유 및 방송콘텐츠 진출 확대 기반 마련

- **(국제기구 협력 강화)** ITU, AIBD 등 방송통신 국제행사 참가를 통한 해외 방송통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협력 채널 활성화

-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북한 방송통신에 대한 이해제고 및 교류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국내·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 개최

-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TV, 라디오를 통한 북한의 문화, 역사 등 비정치 분야의 통일관련 프로그램 제작·방영 지원

-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학술연구와 교류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해외 전문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 방송과 통신 이용현황 조사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0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추진 계획 마련	3월	
2/4분기	글로벌 방송통신 기술 및 정책 동향 파악	4~6월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사 선정	4~6월	
3/4분기	주요 국가와의 방송통신 정책 방송통신 정책 교류, 협력 추진	7~9월	
	남북 방송통신 국제 컨퍼런스 중간 점검	7~9월	
4/4분기	주요 국가와의 방송통신 정책 방송통신 정책 교류, 협력 추진	10~12월	
	남북 방송통신 국제 컨퍼런스 개최	11월	
	통일 방송프로그램 방영	12월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정리	12월	
	'20년 성과정리 및 '21년 계획 수립	12월	
연중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연4회 개최	분기별 1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내 방송통신 사업자 및 학계 등 전문가, 시청자 등

○ 이해관계자

-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자, 해외 방송통신 관련 규제 기관 등

□ 기대효과

○ 방송통신 규제 분야 정부 간 정책교류 및 주요 국제기구 논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정책 동향 파악 및 국내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국제협력 기반 강화

○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에 대한 의식 제고 및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확산 하는 한편, 북한 방송통신 현황 등에 기초 자료 제공을 통해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⑤)			
① 방송통신 운영지원(3135)	방송통신 발전기금	33.30 (33.30)	72.93 (72.93)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302)		13.30	30.90
-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3.05	3.05
-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1	1
-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3.4	3.4
-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0.5	0.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7	실적 '18	실적 '19	목표치 '20	'20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	75	85	85	86	코로나 19 사태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고, 국제회의·행사 등이 취소·연기되는 등 국제교류·협력 업무 추진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정 ※ 국제협력 실적 : 10건 만족도 : 72점	[(방송통신 국제협력 추진실적/계획)x0.5]x100 +(방송통신국제협력만족도)x0.5	협력, 협상 결과자료 및 방송통신 수혜기관 설문조사 실시
남북방송통신 교류 정책 만족도(공통)(점)	84.6	74	82	80.5	최근 3년간('17~'19년) 평균실적은 80.2점이며, 남북 관계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80.5점을 목표치로 설정	남북 방송통신 교류 분야 정책 만족도	방송통신 업계 및 학계 등 남북 방송통신 교류 정책 수혜기관 설문조사 결과

Ⅳ
환류 등 관련 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2. 평가결과 환류 체계
3. 변화관리 계획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송정책, 이용자정책, 행정관리 분야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18.7월)

○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로 운영하되, 소위원회는 관리과제 분야별로 구성

○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시행계획 등의 심의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결과 심의

○ 성과관리에 관한 절차, 환류 등 성과관리의 전반적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 수행

□ 평가지원조직 구성

○ 효율적인 평가업무 관리와 체계적인 평가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총괄팀과 자체평가위원회 분과별로 평가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평가지원팀 구성·운영

- 자체평가 기본방향, 분야별 평가계획 등 기획 및 종합·조정 업무 수행

- 반기별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총괄, 평가 분야별 점검결과 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작성

-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및 평가분야 정책에 대한 업무 설명회, 현장방문, 간담회 실시 등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 평가(점검)의 시행

○ 매년 상반기 세부과제별로 일정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은 원인 분석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 연간 추진실적 평가 시, 평가지원팀은 각 소관별 자체평가계획에서 제시된 분야별 평가지표의 측정기준에 따라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를 소위원회에 제출

-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평정 후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및 심의·의결

○ 자체평가결과 미흡과제는 원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향후 정책수립 시 반영

- 인력(업무량)·조직(구조) 차원 등의 종합적 심층진단도 병행

<자체평가 실시(점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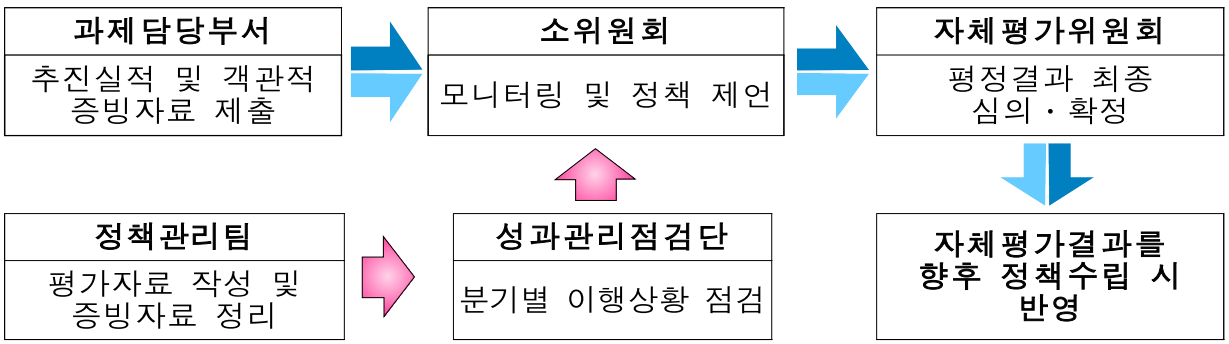

□ 주요 일정

2020년 2/4분기	➡	o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o 자체평가 시행계획 수립
2020년 3/4분기	➡	o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실시 o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정
2020년 4/4분기	➡	o 자체평가 정책설명회 실시 o 하반기 자체평가 실시
2021년 1/4분기 (1월)	➡	o 최종평가 실시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성과관리의 주요 환류체계

○ 성과관리 관리과제별 자체평가(7등급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과제별 개선보완사항은 다음 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

○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지 않으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증액을 지양

○ 성과관리 자체평가 결과는 부서성과평가 점수에 반영하여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평가 시 활용

□ 정책개선 및 정책품질 제고에 활용

○ 자체평가 수행과정에서 평가위원 등이 발굴 또는 제시한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여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 평가결과 우수·미흡사례 등은 각 국에 전파·공유하여 성과관리 제고

-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은 다음 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평가 시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행사항 점검· 관리

※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여부를 자체평가 시 반영

□ 조직 및 정원관리에 활용

○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해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소요정원 및 중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 평가 및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조정·재배치, 부서기능 재조정 등 탄력적인 조직 운영

- 특히, 미흡과제에 대해서는 인력(업무량)·조직(구조) 차원에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운영에 활용

□ 예산편성에 활용

○ 관리과제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소관 부서의 재정사업에 반영하여 자체평가와 재정사업 간의 인센티브·패널티 체계 운영

- 관리과제 중 '우수' 평가를 받은 부서의 재정사업에 대하여 증액, '미흡' 평가를 받은 부서의 재정사업은 감액 추진

□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 활용

○ 복수직 4급 이상 개인성과평가 결과,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승진·인사 심사 및 전보·파견 등 보직관리에 활용

- 업무실적이 탁월한 우수인력은 주요보직 전보 및 부외파견 시 해당직원의 희망사항을 우선 배려

○ 국내외 장·단기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선 배려

□ 성과급 지급

○ 성과관리과제별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성과에 반영하는 등 통합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 4급 이상 :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연초에 체결한 '성과계약과제'에 대한 목표달성도(업무실적)와 직무수행능력, 부서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 5급 이하 : 근무성적평가, 부서성과평가, 성과급심사위원회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성과연봉(5급) 및 성과상여금(6급 이하) 지급등급 결정

※ 부서성과평가에 자체평가결과와 국정과제 등 특정과제 수행실적을 반영

<성과급 지급 등급결정 평가항목>

구 분	대 상	등급결정 기준
성과연봉	4급 이상	ㅇ 직무성과계약(50%), **부서성과평가(40%)***, 직무수행능력평가(10%) * **자체평가(80%)**+행정관리평가(20%) →자체평가의 개인평가 반영비율은 32% 수준임
성과연봉	5급	ㅇ 근무실적평가(60%), **부서성과평가(40%)***, 성과급심사위원회평가(10%) * **자체평가(80%)**+행정관리평가(20%) →자체평가의 개인평가 반영비율은 32% 수준임
성과상여금	6급 이하	

□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과제 포상(금) 지급

○ 202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과제수행 동기 부여

- 포상대상 : 자체평가 결과 1등급 ~ 3등급 과제

- 포상규모 : 1등급 80만원, 2등급 50만원, 3등급 30만원

< 평가결과 환류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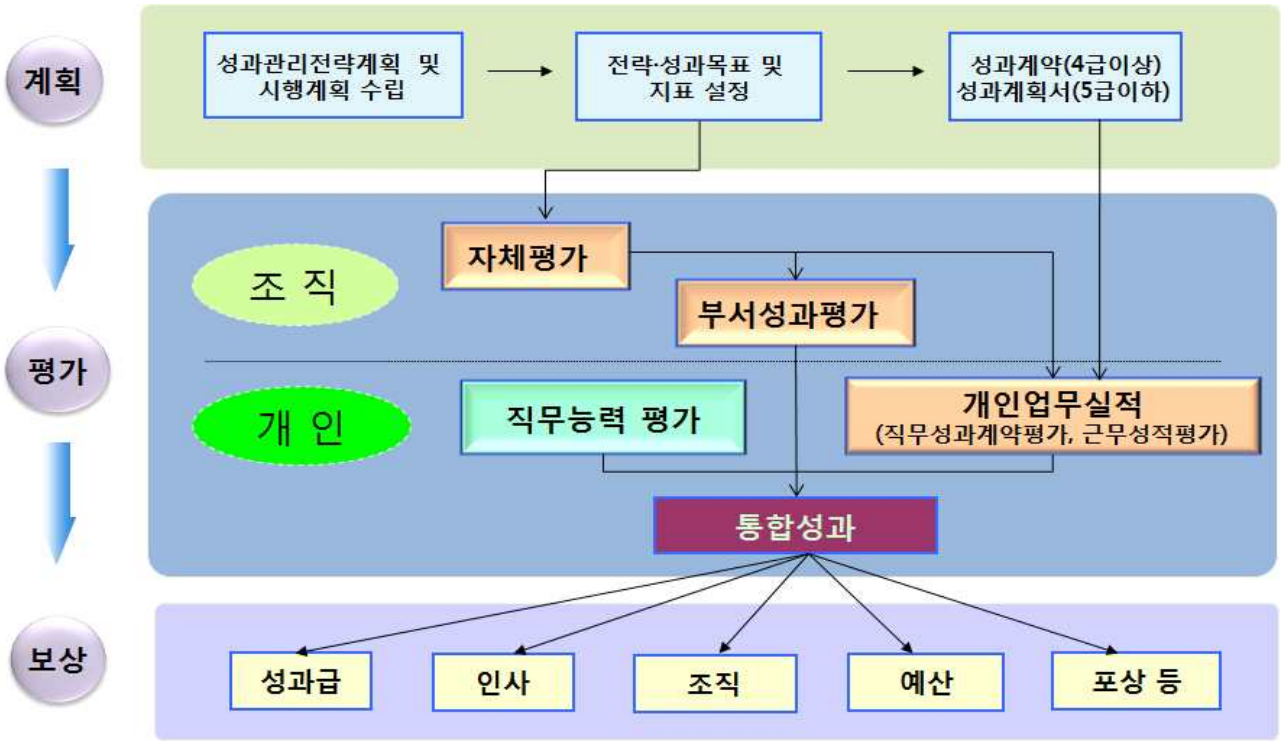

< 방통위 세부 평가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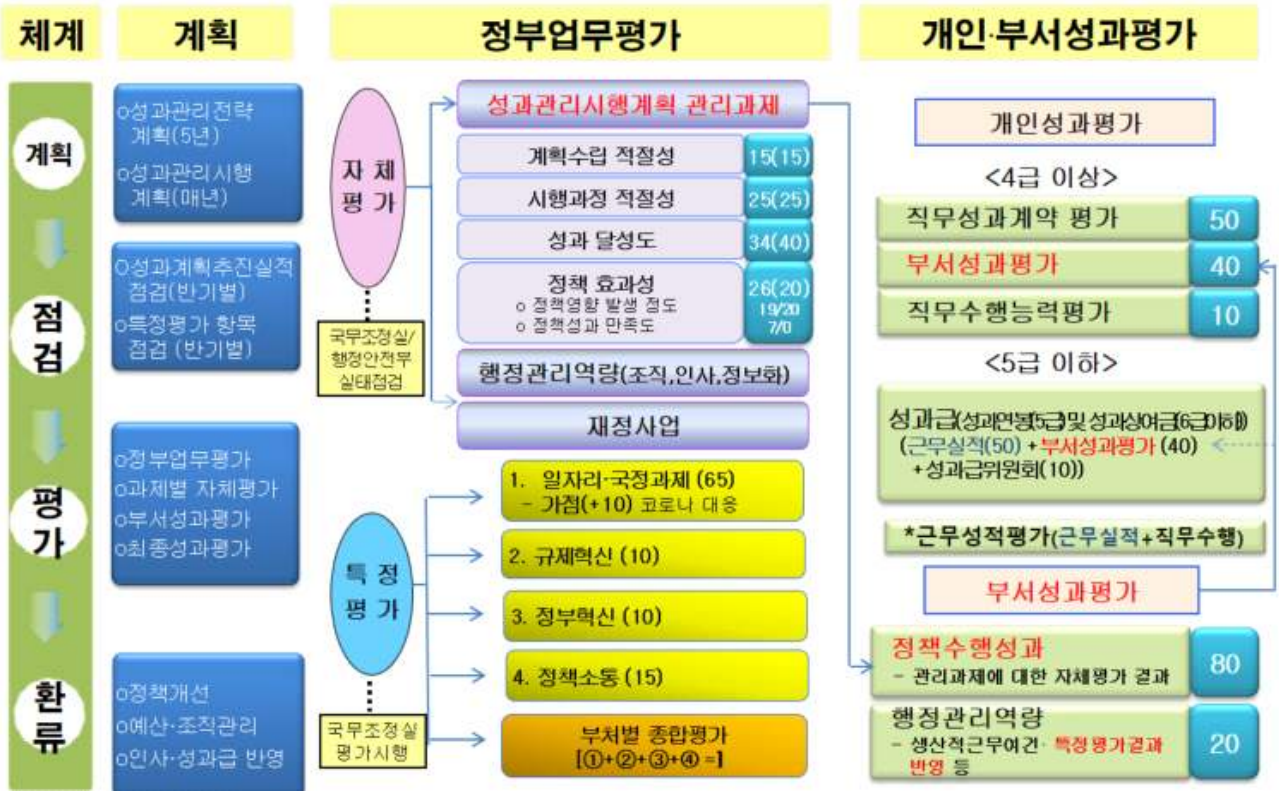

3. 변화관리 계획

3-1. 업무프로세스 개선

□ 집중근무시간 운영

○ 위원회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하루 중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을 핵심근무시간(Core Time)으로 정하여, 그 시간에는 업무에 몰입

- 집중근무시간에는 전화, 인터넷, 티타임 등 사적인 용무와 휴식을 금지하고, 회의, 대면결재 대기 등 업무 집중을 저해시키는 행위 자제

-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 업무회의 개최 등을 지양하고,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도 자제

- 주어진 업무시간 안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업무지시는 가능한 오전에 실시하고, 바로톡을 통해 업무시간 내에서 단체대화 활용

□ 근무시간 자율설계

○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자율적·효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여 기관·부서 차원의 생산성 제고

- 자기개발, 자녀 돌봄 등으로 근무시간 선택제 등을 희망하는 직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신청방법 안내

-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12~13시) 앞 또는 뒤 1시간을 자율적으로 붙여 사용하는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 부서장은 부서원의 유연근무를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허가하고, 유연근무자의 승진 및 근무평가 등에 불이익 금지

3-2. 조직문화 개선

□ '가족 사랑의 날' 확대

○ '가족 사랑의 날'을 주2회로 확대하여 자기계발 및 여가생활 충족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 매주 수요일·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정시퇴근 유도

- '가족 사랑의 날'은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국회, 예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정시퇴근 유도를 위해 구내방송으로 '가족 사랑의 날'을 공지하고 부서별로 순회하여 정시퇴근 독려

□ 기관·부서 단위의 집단 유연근무제 활용

○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기관전체·부서별 집단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선정하고 기관전체 집단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여 2시간 조기퇴근

- 문화행사, 워크숍 등 국 단위 행사시 집단유연근무제 사용 권장

- 유연근무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마련

□ 연가사용계획 수립

○ 개인별 부여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공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

- '20년 권장연가 일수(15일)를 반영하여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장은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 조정

- 간부직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과·팀장 이상 부서장은 매월 연가사용계획 수립·실시

□ 권장연가제 및 연가저축제 운영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당해 최소 사용해야 할 연가일수를 공지하고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가 중 일부를 저축

- 권장연가일수 대비 미사용 연가일수는 연가보상비 지급일수에 제외

- 연가사용 활성화 차원에서 연가보상 작업시 1~2일을 저축연가로 전환

3-3. 직원교육 강화

□ 다양한 시책교육을 통한 주요 국정과제 공유·확산

○ 국정철학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사 초빙 교육 및 자체 직장교육 실시

○ 연간 교육훈련 시간의 40% 이상을 공직가치, 국정철학과 연계한 부처지정학습 이수를 의무화

○ 공직가치 내재화를 위해 사이버 교육을 통한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를 독려

□ 공통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청취과정 및 전화외국어 과정을 운영

○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직원의 연중 다양한 청렴 활동에 대해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방안을 마련

□ 성과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관리 강화

○ 상시학습제도 정착을 통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

○ 직원이 조직목표와 연계한 자기개발계획서 수립 시 개인의 부족역량을 제시하고 조직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정을 추천하는 코칭 실시

3-4.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통한 방송통신정책 추진 지원

○ 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개최하여 집행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 조기집행 달성을 위한 점검 추진

○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모절차 도입을 통해 사업자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예산집행 및 정책의 품질 제고

○ 방통위 예산 및 기금 사업관리지침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계획서 양식, 부속서류 등을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서류요청 관행 개선

3-5. 성과지표 관리방법 개선

□ 성과지표 관리방법

○ ‘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과제 성과지표 대표성 연구 결과로 도출된 과제별 예비성과지표 발굴 및 관리(지표 POOL)

- 방통위 성과목표 과제별 성과지표 관리를 통해 ‘20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과제의 성과지표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 성과관리 수준제고를 위해 각 국 총괄담당 등으로 성과관리 T/F를 구성·운영

- 성과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회의, 워크숍 등 개최 추진

○ 성과관리 제도개선 및 위원회 내 성과주의 확산방안 마련을 위한 타 부처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 사후규제 업무 위주인 방통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

- 정책토론, 공청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업무 유형별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진행

○ 자체평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성과지표 선정, 관리에 대한 자문을 충분히 반영하여 성과지표의 합리성 확보

□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제고**

○ 전략목표 수준의 기관대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총체적인 업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가급적 구체적인 양적수치로 측정 가능한 정량지표(계량지표)를 사용

- 성과지표의 구체성·명확성이 떨어지는 복합지표는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단일지표로 개발 노력

□ **성과지표의 변별력 강화**

○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평가 시 과제 간 변별력을 확보하고 정책개선 효과증진 노력

- 목표치의 적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도전적인 성과지표 설정을 유도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정책대상별 유형별 의견수렴 절차 강화

○ 현장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자체평가 평가지표 중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점수를 높게 부여(15점)

- 정책추진단계별(수립-집행-환류)로 이해관계자, 정책고객 및 국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설명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업 등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얻고자 하는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

- 정부 운영에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활동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

*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 방식 개선, 참여기회 확보, 참여수준 심화 등

**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 '20년도 관리대상 과제 및 의견수렴 방법 >
o 대상과제 : '2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 26개 o 의견수렴 방법 : 과제별 특성에 따라 국민, 정책고객집단,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정책토론·이슈토론·간담회·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 o 전담부서 : 과제담당부서 o 관리체계 : 과제별 의견수렴 결과 및 정책반영도를 자체평가 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관리

□ 방송통신정책과정에 국민참여제도 도입

○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숙의제 도입

- 영향력이 큰 주요방송통신정책을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토론 또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논의절차 마련

○ 주요정책의 수립·집행·환류 전 단계에 걸쳐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책을 재설계하는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혁신기획담당관)를 지정하여 과제 발굴 및 관리

□ 정책참여 활성화

○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별 현장의견수렴 외 '방통위 홈페이지'를 활용(온라인, 모바일)하여 방통위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의견 청취

-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 국민 관심이슈 등에 대해 의견제시, 찬반토론, 설문조사,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 안건관리 담당자(행정법무담당관 제안담당)를 지정하여 등록안건, 안건 검토, 진행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각 부서별로 국민제안 안건 발굴 및 참여 실적을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반영하여 활성화 유도

<국민제안 의견수렴 방법>

구 분	주요내용	진행방식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대화 (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정부 주요정책, 국민생활 밀접 과제 등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투표·설문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온라인 찬반 투표 및 설문조사 실시	투표 및 설문조사
아이디어 공모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정책 반영 및 우수제안 포상	공모

□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운영

○ 방송통신 주요정책 관련 정책고객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산·학·연 직능별 대표성과 소비자·노인·장애인 등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학계, 법조계, 연구계, 소비자, 시청자, 여성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22명)

- 연 2회(상·하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로 개최하며, 방송통신 현안관련 국별 주요정책 설명 및 의견수렴 방식으로 진행

[붙 임]

1. 성과지표 현황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붙임1-1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4	4	0 (%)	0 (%)	2 (50%)	2 (50%)	4 (100%)
성과목표	8	10	0 (%)	0 (%)	8 (80%)	2 (20%)	10 (100%)
관리과제	25	40	0 (%)	0 (%)	29 (72.5%)	11 (27.5%)	32 (80%)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4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①방송사업자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건)	방송법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 + 방송 공정성 위반**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 건수 * 방송법 제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위반 **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14조(객관성) 위반	14	정량	산출	
2.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①통신·인터넷시장 제재건수(건)	연간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 유통법상 제재건수 집계	5	정량	산출	국제평가지수 (IMD)
3.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①방송사업자 방송사업매출액 (조원)	과년도 지상파방송·지상파 DMB·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	20.8	정량	결과	
4.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 한다.	①기관혁신 및 소통 만족도(점)	7점 척도 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70	정량	결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Ⅰ-2.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①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율(%)	① + ②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 0.5 ※ 5점 리커트 척도(만족도 목표치 92.2을 100점으로 환산) ②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터널 수 목표 달성도 × 0.5 ※ '20년 목표 : 300개	100	정량	산출	
Ⅰ-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①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 × 0.5]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수) × 0.5]	90	정량	산출	
Ⅱ.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Ⅱ-1.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건수(건)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통한 개선실적	8	정량	산출	
Ⅱ-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팩트체크 결과물(건)	팩트체크 결과물 건수	16	정량	결과	
Ⅲ.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Ⅲ-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시청각장애인 TV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누적 보급대수 /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 수) × 100	90	정량	산출	
Ⅲ-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방송산업 기반 구축률(%)	(①외주제작 정책만족도 + ②방송공동제작 협력강화 정책만족도 + ③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성과도) / 3	80.5	정성	결과	
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 한다.						
Ⅳ-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중점추진과제 이행률(%)	(이행과제 건수/ 세부과제 건수) × 100	100	정량	산출	
	②규제심사위원회 등 규제 관련 활동	규제심사위원회 등 규제 관련 위원회·회의·행사 개최 실적	7	정량	산출	
Ⅳ-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국제 컨퍼런스·회의 등 국제행사 활동 건수	국제 컨퍼런스 및 회의 등 국제행사 참여 실적	2	정량	산출	
	②보도자료 온라인 콘텐츠 제작률(%)	온라인 콘텐츠 게재건수/ 보도자료 배포건수	80	정량	산출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Ⅰ-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①미디어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율(%)	① + ② ① 방송 제도개선 방안 정비 추진율(0.7) [연구반 운영X0.2+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X0.2+방안마련X0.3] ② 지상파UHD 활성화 방안 정비 추진율(0.3) [지상파UIHD 활성화 정책 추진단 등 운영X0.1+방안마련X0.2]	90	정량	산출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 교육 강화	①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만명)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합계	71	정량	산출	
		②미디어교육 이수율(%)	(미디어교육 수료인원/미디어교육 수강인원) x 100	88.7	정량	산출	
		③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5점 리커트 척도 (100점 만점 환산)	92.2	정량	결과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①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 이행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10대 정책과제 이행률(%)	78	정량	산출	
		②방송사 자체제작 투자비율	제작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 자체제작비/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총 제작비) × 100 (%)	31	정량	산출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①방송통역 수어 통역사 재교육(명)	2020년 방송통역 수어 통역사 재교육 인원	10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①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제고율(%)	[(재허가 세부계획 반영 건수/재허가 사전 기본계획 수립시 세부계획으로 위임한 건수) × 0.5] +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 × 0.5]	95	정량	산출	
	② 종편·보도채널의 공적 책무 강화	①종편·보도PP의 공적책무 제고율(%)	[(재승인 심사제도 개선안의 내용을 반영한 재승인 심사 운영 / '20년도 재승인 대상 방송사 수) × 0.5] + [(방송의 공적책임 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수 ×0.5)]	95	정량	산출	
Ⅱ.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Ⅰ-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 상생의 통신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보호와 권익 강화	①통신·인터넷 정책 개선 건수(건)	정책 개선 건수를 결과물로 실적 산정	3	정량	산출	
		②통신분쟁 신청처리 건수(건)	통신분쟁 조정 처리 건수	112	정량	산출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①유선시장 전기통신사업법령 가이드 준수율(%)	[(경품가이드 준수율+허위·과장 광고 가이드준수율)/2]*100	85.4	정량	산출	
	③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①단말기유통법 온라인 준수율(%)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준수 건수/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총 건수) ×100	81.5	정량	산출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	①통신서비스 피해예방교육 역량 향상률(%)	[(계층별 교육후 역량 점수 - 교육전 역량 점수) / 교육전 역량점수] x 100	17	정량	산출	
		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업무 만족도(점)	∑이동통신사업자 만족도 점수/이동통신사업자 수	80.5	정성	결과	
Ⅱ-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위치정보의 안정성·활용 강화	①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통) (하향지표)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각1,500명 대상 1인당 월 평균 수신량 측정	15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②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만족도(점)	(신규 B/M 발굴 사업화 지원 수혜자만족도 ×0.5)+(오프라인컨설팅 수혜자 만족도×0.5)	90	정성	결과	
		③임시조치 개선 등 제도개선 달성률(%)	[제도개선안 마련(0.5)+(임시조치 개선 등 입법 지원 횟수/목표)×0.5]	70	정량	산출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①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점)	교육수혜자를 대상으로 교육종료 후 만족도 조사	88.1	정성	결과	
		②특수유형부가통신 사업자 불법정보 기술적 조치 개선율(%)	[(상시점검 등을 통한 기술적 조치 개선(차단) 건수/목표)x0.5]x100+[(불법음란정보 특징값(해시, DNA) 방심위 제공 건수/목표) x0.5]x100	100	정량	산출	
Ⅲ.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Ⅲ-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①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도(점)	[(방송심의활동 효과 만족도 3개 항목 각 7점척도 평균점수)/7]×100	63.9	정성	결과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확대	①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점)	(자막방송만족도×0.87)+(수어방송만족도×0.04)+(화면해설방송만족도×0.09)	86	정성	결과	
	③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개선건수	①방송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건수(건)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 건수(건)	6	정량	산출	
Ⅲ-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①콘텐츠 제작 활성화 기반 조성률(%)	(외주제작 정책 만족도×0.5) + (방송공동제작협력 강화정책만족도× 0.5)	79	정성	결과	
	②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①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성과도(점)	(기업성장 기여도x0.5) + (사업 만족도x0.5)	4.18	정성	결과	
	③ 시청점유율 조사 타당성 제고	①시청점유율 조사 신뢰성 개선도(%)	(패널 대표성 개선율 x 0.6) + (N스크린조사 개선사항 이행률 x 0.4)	9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 한다.							
Ⅳ-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①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율(%)	국정과제 대상 과제 추진 실적 점검회의, 국정과제 시스템 운영 및 개선실적을 정성평가	100	정량	산출	
		②혁신과제 이행율(%)	(이행과제 건수/과제 건수)×100	100	정량	산출	
	② 사회적 재난 및 비상 대비 관리체계 강화	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AL(%)=(T/5)x100 ※ AL : 수준율 T : 전체 기관의 수준평가 점수 평균(5점 만점)	80.7	정량	산출	
		③사회재난 대비 설적(%)	{[(코로나19 대응반 운영 기간(월)/사회적재난 기간(월))×0.5]+[(재난방송실시 건수/재난방송요청건수)×0.3}+[대국민 코로나 홍보 활동 월간 2건×0.2]}×100	100	정량	산출	
		②비상대비 점검 및 보안점검 달성률(%)	{[(자원조사실시업체/자원조사대상업체)×0.5] + [(보안점검 기관수/보안점검 목표 기관수)×0.5]}×100	100	정량	산출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①기존 규제정비 과제 이행율(%)	이행률(%) = (기존규제정비 이행과제수 / 기존규제정비 과제수)×100	98	정량	산출	
	④ 국정가치를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	①국정과제 교육 활성화(시간)	총 교육 이수시간 합계/4급 이하 현원(과장급 포함)	18	정량	산출	
		②유연근무실시율 제고(%)	위원회 직원 유연근무 실시비율(%) ※ 12일 이상 유연근무를 사용한 인원/위원회 현원)	80	정량	산출	
		③관용차량의 친환경차량 보유율(%)	위원회가 보유한 관용차량 중 친환경차량의 비율(친환경차량(대)/총 관용차량(대))	7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0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Ⅳ-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 소통 강화	①정책홍보 활성화율(%)	(보도자료 배포건수 /200건)*60%+ (오보대응건수/오보 모니터링 건수) *40%	90	정량	산출	
		②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만족도(점)	(대국민만족도 50% +대언론 만족도 50%)	76	정성	결과	
	②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강화	①국민참여 콘텐츠 실적	방통위SNS에 게재된 국민참여 콘텐츠 게재건수	120	정량	산출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①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	[(방송통신 국제협력 추진 실적/계획)x0.5]x100+ (방송통신국제협력만족도)x0.5	86	정량	결과	
		②남북방송통신 교류 정책 만족도(점)	남북 방송통신 교류 분야 정책 만족도	80.5	정량	결과	

붙임1-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미디어환경변화에 대응한다.		
	①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국정 70-1)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업무 1-1)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국정 70-1) 지능정보화사회 이용자 보호 강화 (업무 3-2)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지역방송활성화로 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 실현(국정 70-2)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업무 2-1)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국정 70-1)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업무 2-3)
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국정 4-1) 방송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및 해직자 명예 회복(국정 4-2)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업무 2-1, 2-3)
	② 종편·보도채널의 공적 책무 강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국정 4-1) 방송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및 해직자 명예 회복(국정 4-2)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업무 2-1, 2-3)
Ⅱ.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 상생의 통신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보호와 권익강화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국정 33-9)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업무 1-3)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통신시장 투명성 확대를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 (국정 31-6) 방송통신분야 상생환경 조성(업무 1-3)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강화(업무 3-2)
	③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통신시장 투명성 확대를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 (국정 31-6) 방송통신분야 상생환경 조성(업무 1-3)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국정 33-9)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업무 3-2)
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위치정보의 안정성·활용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국정 70-5) 불법유해정보 적극대응(업무 3-1)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국정 33-9)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업무 1-1)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업무 3-2)
	②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국정 70-5) 불법유해정보 적극대응(업무 3-1)
Ⅲ.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조성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업무 2-1)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국정 70-1) 방통통신 소외계층 지원강화 (업무 3-3)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국정 70-4)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업무 1-3)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국정 70-4)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일자리 59-1) 한류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업무 1-2)
	②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유도(일자리 59-1)
	③ 시청점유율 조사 타당성 제고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업무 1-1)
Ⅳ.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 한다.		
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② 사회적 재난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④ 국정가치를 실천하는 공직문화 조성	
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②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강화	
	③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업무 1-3)